

정책자료 95-06

#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追加開放方案

金 準 東

1995. 8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追加開放方案

金 準 東

1995. 8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序 言

최근에 들어와 첨단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며 또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經濟先進化를 추구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현재 외국인직접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개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業種開放 문제는 OECD 加入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기존의 개방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그 개방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이 국제경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개방정도가 미진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문호를 보다 개방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追加開放方案을 立案하는데 參考가 될 資料를 마련하여 보고자 하였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중에서도 어떤 업종을 먼저 개방하고 어떤 업종은 계속 유보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국민후생증대의 측면이나 국내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1997년 유보예정인 105개 업종을 그 優先順位에 따라서 完全開放, 部分開放, 開放留保 등으로 분류하여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追加開放에 관한 하나의 施案을 만들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本 研究報告書는 本 研究院의 金準東 박사가 집필하였고 임병철 연구원이 원고검토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경희 연구조원이 도표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료수집에 있어서 지역정보센터의 김원호 박사와 외무부의 김종용 과장, 이현주 서기관께서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재정경제원 외국인투

자과의 문창용 사무관과 통상산업부 국제기업과의 윤상흠 사무관계서는 개별업종의 특수한 상황을 지적하여 주었고, 본 연구원의 김관호 박사는 논리전개와 원고구성에 도움이 되는 論評을 해 주었다. 그밖에 院內세미나 참석자들의 提言도 본 報告書의 최종본의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무쪼록 본 報告書가 政策當局, 學界, 業界에서 關聯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 바라며, 끝으로 본 報告書의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 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5년 8월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 長 柳 莊 熙

# 〈目 次〉

I. 序 論 .....	9
II.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	11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政策의 變遷過程 .....	11
2.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推移 및 現況 .....	15
III. 서비스업 部門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效果 .....	23
1. 模型의 設定 .....	24
2. 서비스업 部門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效果 .....	27
IV. 外國의 外國人直接投資 留保事例 .....	31
1. 멕시코 .....	31
2. 기타 OECD 국가 .....	39
3. 主要  개발도상국가 .....	42
V.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開放現況과 追加開放方案 .....	45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開放現況 .....	45
2. 部門別 制限 狀況과 開放計劃 .....	49
3.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追加開放方案 .....	57
VI. 要約 및 結論 .....	67
參考文獻 .....	71

## 〈表 目 次〉

〈表 II-1〉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 예시제(1994. 6. 발표) .....	15
〈表 IV-1〉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 유보상황(1994년 기준) .....	33
〈表 IV-2〉 멕시코 금융부문에 있어서 NAFTA 금융기관에 대한 점유율상의 제한 .....	35
〈表 IV-3〉 OECD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유보 및 상호주의 적용현황 .....	40
〈表 IV-4〉 주요 개발도상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유보현황 .....	43
〈表 V-1〉 외국인 투자대상업종 현황 (1995. 3. 31.현재) .....	45
〈表 V-2〉 외국인투자 제한 기준 .....	46
〈表 V-3〉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제한업종 현황(1995. 3. 31.현재) .....	47
〈表 V-4〉 합작의무업종 현황 (1995. 3. 31.현재) .....	48
〈表 V-5〉 외자도입법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및 제한내용(1995. 3. 31.현재) .....	48
〈表 V-6〉 농수산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개방계획 .....	49
〈表 V-7〉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개방계획 .....	51
〈表 V-8〉 도·소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개방계획 .....	52
〈表 V-9〉 운송·통신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개방계획 .....	53
〈表 V-10〉 금융·보험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개방계획 .....	54
〈表 V-1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개방계획 .....	55
〈表 V-12〉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개방계획 .....	56
〈表 V-13〉 1997년 이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과 국제간 비교 .....	58
〈表 V-14〉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추가개방방안 (1997년 기준) .....	64

## 〈圖目次〉

〈圖 II -1〉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推移(19981-1994) .....	16
〈圖 II -2〉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産業別 分布(1962-1994) .....	17
〈圖 II -3〉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産業別 分布의變化 推移 .....	18
〈圖 II -4〉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문 외국인직접투자의業種別 分布 (1962-1994) .....	19
〈圖 II -5〉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문 외국인직접투자의業種別 分布의變化 推移 .....	20
〈圖 II -6〉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地域別 分布(1962-1994) .....	21
〈圖 II -7〉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地域別 分布의變化 推移 .....	22



## I. 序論

우리나라는 1960년 『外資導入法』을 제정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제도를 도입한 이래 1980년대에 들어와 開放化政策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문호도 대폭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賃金 및 不動産價格의 상승과 국내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국내영업환경의 악화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90년대 이후 그 증가율이 鈍化되었다.

최근에 들어와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經濟先進化를 추구하려는 기본목표하에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현재 외국인직접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개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業種開放 문제는 OECD 加入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기존의 개방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그 개방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의 본격적인 자유화정책이후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대부분 자유화되었으나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아직 그 개방정도가 미진하여 1994년 7월에 마련된 개방계획에 의하면 1997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총 105개 업종중 서비스업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방에 따른 效果는 어떠한지 그로부터의 肯定的 效果를 極大化하는 방향으로 追加開放方案을 마련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중에서도 어떤 업종을 먼저 개방하고 어떤 업종은 계속 유보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국민후생증대의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파급영향까지 고려하여, 1997년 유보예정인 105개 업종을 完全開放, 部分開放, 開放留保 등으로

분류하여 보고자 한다.

本 報告書의 구성을 보면 우선 제2장에서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變遷過程을 간략히 살펴 보고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推移 및 최근 現況을 알아 보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추가개방이 국민소득 측면에서 가져올 효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국민소득 증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멕시코를 비롯한 OECD국가와 기타 주요 개발도상국의 留保事例를 정리하여 보고 제5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制限內容과 留保業種 및 開放計劃을 部門別로 살펴 본 다음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 追加開放方案을 제시하여 보도록 한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要約함으로써 끝을 맺고자 한다.

## Ⅱ.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政策의 變遷過程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추가개방방안에 대해 살펴 보기에 앞서 과거 외국인직접투자 관련정책의 변천과정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이 및 현황을 알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정책의 변천과정은 크게 制度 導入·整備期, 開放時期, 그리고 自由化擴大時期의 세 期間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制度 導入·整備期 (1960~1983)

우리나라는 1960년 『外資導入法』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租稅支援 혜택을 포함한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왔다. 그러나 이 당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은 한편으로는 외국인투자 유치대상업종이나 지역에 대해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업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持分을 제한하는 등 規制를 가하였다.

점차 산업이 발전되어감에 따라 1970년부터는 중점유치 업종을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탈피하여 중화학공업 분야를 비롯한 고도기술산업 부문으로 전환하였고 각종 규제도 완화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 認可節次를 간소화하고 誘致 對象 분야를 확대하였으며, 投資規模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 投資活性化 조치가 실시되었다.

## (2) 外國人直接投資 開放時期 (1984~1992)

1984년 7월에 이르러 정부는 경제개발전략을 대폭 수정하여 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開放化政策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호도 대폭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 - Negative System의 채택 (1984. 7. 1)

- 외국인투자 가능업종을 확대하기 위하여 許容業種 列舉方式(Positive System)에서 禁止·制限業種 列舉方式(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외국인투자 개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 그 결과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1984년 7월 기준 61%에서 76.3%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제조업의 자유화율은 92.5%에 달하게 되었다.

## - 投資比率의 制限 撤廢 (1984. 7. 1)

- 종전에는 외국인투자비율에 제한을 두어 외국인투자가 50%까지 허용되는 업종과 100%까지 허용되는 업종을 구분하여 허용하였으나 이를 철폐하여 다른 개별법상 외국인 투자비율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비율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였다.

## - 即時 認可制度의 導入 (1984. 7. 1)

- 외국인투자절차를 간소화하여 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의견조회 절차를 생략하고 재무부에서 즉시 인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90년대에 들어서도 경제개방화 및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해외로부터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提高시키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자유화를 계속 추진하였다.

－ 履行義務의 撤廢 (1990. 1. 1)

- 1989년 12월에는 종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하였던 수출의무 등 각종 이행의무를 철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없애주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유화를 촉진하였다.

－ 原則的 申告制의 導入 (1992. 12. 18)

- 1991년부터 외국인투자에 신고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1992년에는 原則 申告, 例外認可制로 전환하였다.

(3) 自由化 擴大時期 (1993~현재)

최근 UR협상결과 WTO가 출범하고 동시에 EU를 비롯한 지역주의 추세가 심화되는 등 국제경제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한국경제는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산업구조를 高度化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울러 국내경제의 세계화 추진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실시하여온 자유화조치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에서 정부는 1994년부터 外國人投資 環境改善 綜合對策을 수립하여 외국인투자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외국인투자 허용업종을 확대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종합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外國人투자신고의 實質的 申告制 전환 (1994. 3)

- 종전에 정부나 한국은행으로 되어있던 申告受理機關을 외국환은행으로 전환하고 申告處理期間도 20일내지 30일에서 3시간이내로 단축하였다.

－ 外國人投資 認可處理期間 대폭 단축 (1994. 3)

- 종전에 30일정도 걸리던 외국인투자 인가신청서에 대한 처리기간을 5일 (주무부서와 협의시는 15일)이내로 단축하였다.

- 一 貿易業 投資節次 간소화 (1995. 2)
  - 무역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종전 認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하였다(단, 일본종합상사에 대해서는 인가제 유지). 이 결과 1994년기준으로 무역업에 있어서의 인가건수를 72.9%정도 감축한 효과를 가져왔다.
  
- 一 外國人投資 業種開放 擴大 (1994. 7)
  - 1993년 6월에 발표된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을 보완하여 외국어학원 등 57개 업종을 新規 또는 早期開放하기로 하였다.
  
- 一 外國人投資에 대한 綜合서비스體制 構築 (1995. 4)
  - 재정경제원에 外國人投資 綜合支援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투자인가, 각종 정보제공, 고충사항처리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설립과 관련된 複合民願을 시·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서 一括合同審議하여 원칙적으로 45일(경미한 민원은 15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일괄합동심의제와 처리기간 만료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民願自動承認制를 도입하였다.

#### (4) 向後 開放計劃

최근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OECD, APEC 등에서 논의되는 多者間 投資自由化에 대비하기 위해 1993년 6월부터 실시한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 豫示制를 1994년 6월에 수정하여 그 개방폭을 확대하였다. 이에 의하면 1994년 6월말 현재 외국인투자가 全面 不許되던 182개업종중 56개업종을 제외한 126개업종을 1997년 1월까지 연도별로 자유화하여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1997년이후에는 95.1%로 높아질 것이다.

한국정부는 1995년중에도 제2차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업

〈表 II-1〉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 예시제(1994. 6. 발표)

(단위 : 개)

분 류	총업종수	제한업종	자 유 화				'97년 이후에도 제한
			'94.7	'95.1	'96.1	'97.1	
제조업	585	12	1	-	6	1	3
서비스업	495	144	1	42	34	12	47
농·어·광업	68	26	1	2	6	9	6
총 계	1,148	182 (84.1%)	3 (87.2%)	44 (90.6%)	46 (94.2%)	22 (95.1%)	56

註 : 제한업종이란 외국인투자가 전면 불허되는 업종을 말하고 자유화업종에는 부분개방도 포함함. ( )안의 비율은 전체업종중 외국인투자가 전면 불허되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낸 외국인투자의 자유화율을 가리킴.

중개방의 폭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1997년 1월 기준 未開放業種 및 部分開放業種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의 追加開放計劃을 마련·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개방계획에서는 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이 모두 개방하고 있는 업종은 계획기간중 가급적 全面開放함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며 관련산업의 대외경쟁력이나 국내업계의 경쟁상태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開放時期를 조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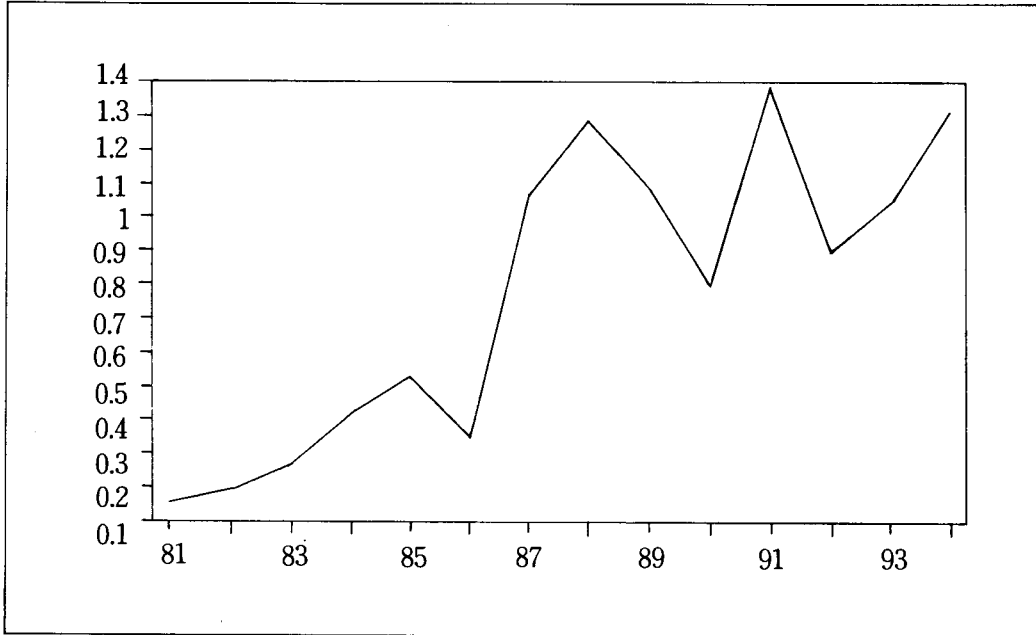
## 2.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推移 및 現況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施行初期인 1960년이래 80년대 중반까지는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圖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1986년까지 연간 5억달러 내외에 불과하던 외국인투자 규모는 1987년에 10억달러 규모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이후 1988년을 頂点으로 鈍化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80년대 후반이후 빈번한 勞使紛糾와 급격한 賃金上昇으

〈圖 II-1〉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推移 (1981-1994)

단위 : US 십억 달러



資料 : 외국인투자동향, 재정경제원

로 과거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해 低賃勞動力을 활용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의 生産費用節減 利點이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 국내금융기관에서의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외국기업의 국내영업환경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8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국가들이 자국의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시키는 등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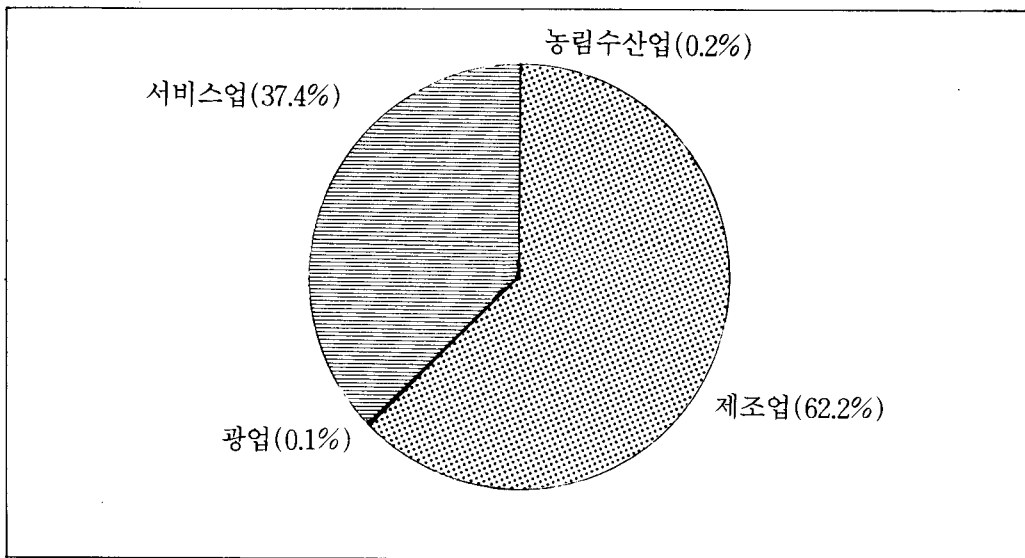
이와같이 1989년이후 부진했던 외국인직접투자는 최근 선진국경기의 회복, 그리고 외국인투자 개방업종의 확대 및 절차의 간소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최근 다시 회복되는 기미를 나타내고 있다. 즉 1994년중 외국인투자 인가(신고포함)실적은 414건에 약 13.2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51.6%, 금액으로는 26.1% 증가함으로써 지난 1988년의 수준을 다시 회복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제조업 분야의 투자비

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부문에의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圖 II-2>에서와 같이 1962-1994년동안의 累計로 볼때 총 외국인투자중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2.2%,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3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다시 1962-1981년, 1982-1992년, 1993-1994년의 세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圖 II-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점차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1962-1981년의 기간중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총 외국인투자중 24.4%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의 1993-1994년에는 그 비중이 60.7%로 크게 늘어 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조업에 있어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절대액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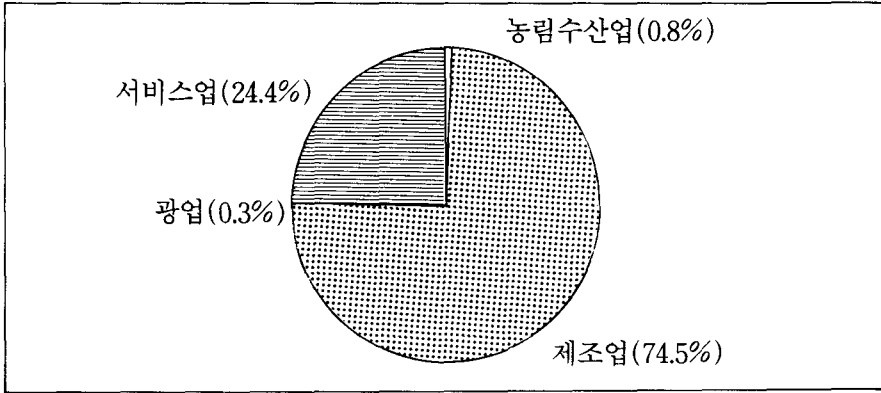
<圖 II-2>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産業別 分佈 (1962-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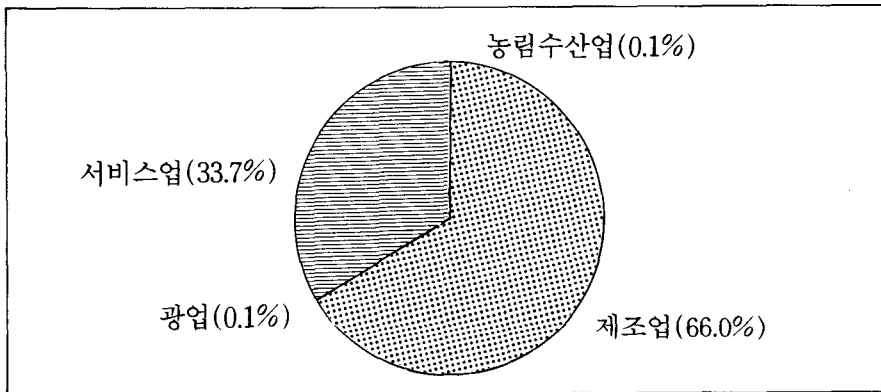
資料 : <圖 II-1>과 같음

서비스업 부문을 細分하여 업종별로 살펴보면 <圖 II-4>에서와 같이 1962-1994년동안 호텔업으로 대표되는 음식숙박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전체 서비스업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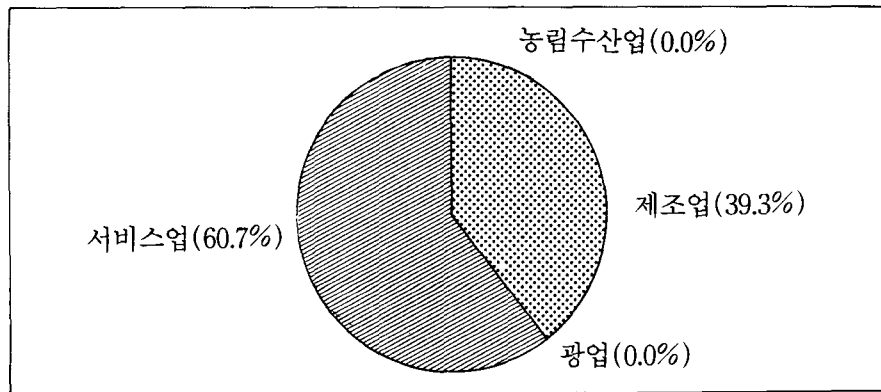
〈圖 II-3〉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産業別 分布의 변화 추이



1962-1981



1982-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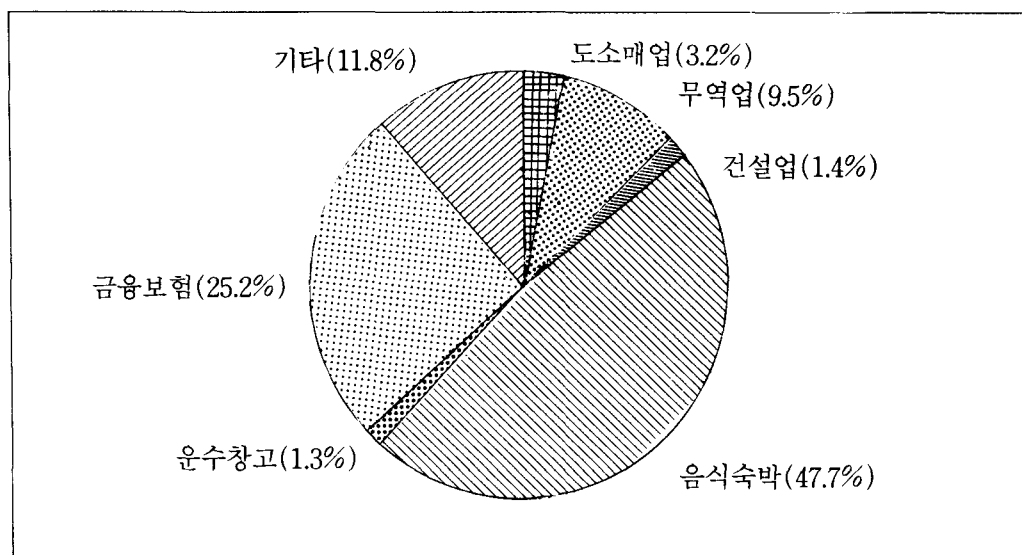
1993-1994

資料 : 〈圖 II-1〉과 같음

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중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외에는 금융보험(25.2%), 무역업(9.5%), 도소매업(3.2%)의 순이다.

이를 다시 <圖 II -5>와 같이 기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최근에 들어와서 음식 숙박업에 대한 비중이 작아지고 대신 무역업 및 건설업의 比重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기타로 분류되는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점차 多變化된다고 볼 수 있다.<sup>1)</sup>

<圖 II -4>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문 외국인직접투자의 業種別 分布 (1962-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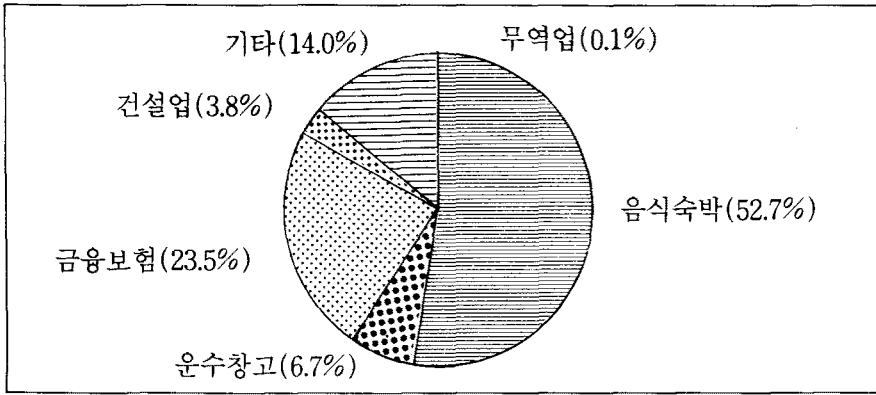


資料 : <圖 II -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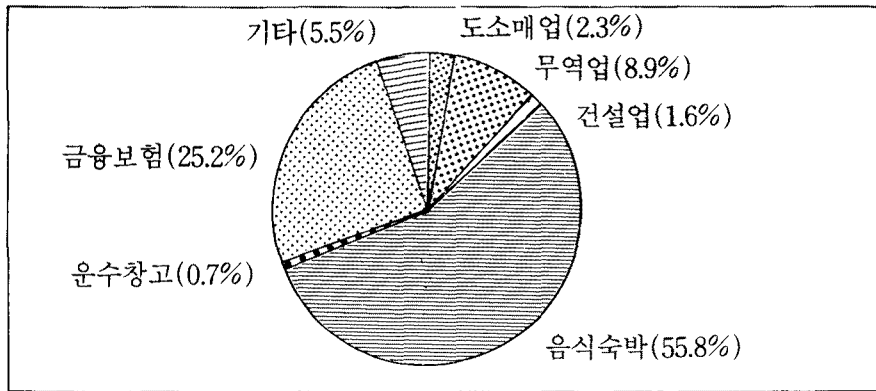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地域別 分布는 <圖 II -6>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962-1994년 累計로 볼 때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4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미주(30.6%), 유럽(24.6%)의 순서이다. 국별로는 일본이 3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28.5%, EU가 21.3%,

1) 기타 업종에 속하는 것으로는 전기·가스·수도, 통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과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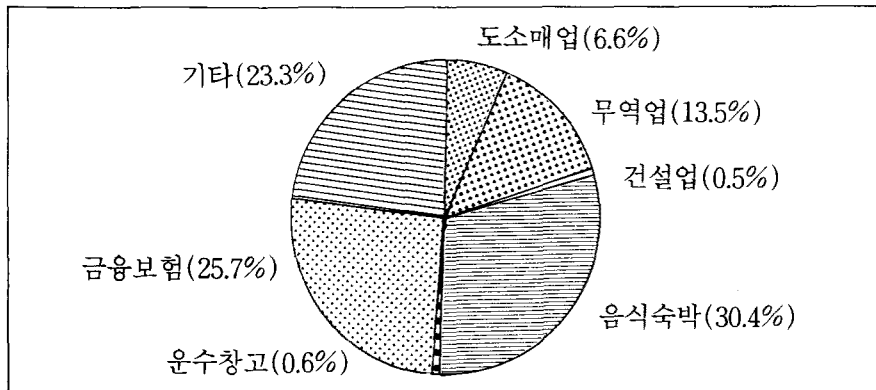
〈圖 II-5〉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문 외국인직접투자의 業種別 分布의 變化 推移



1962-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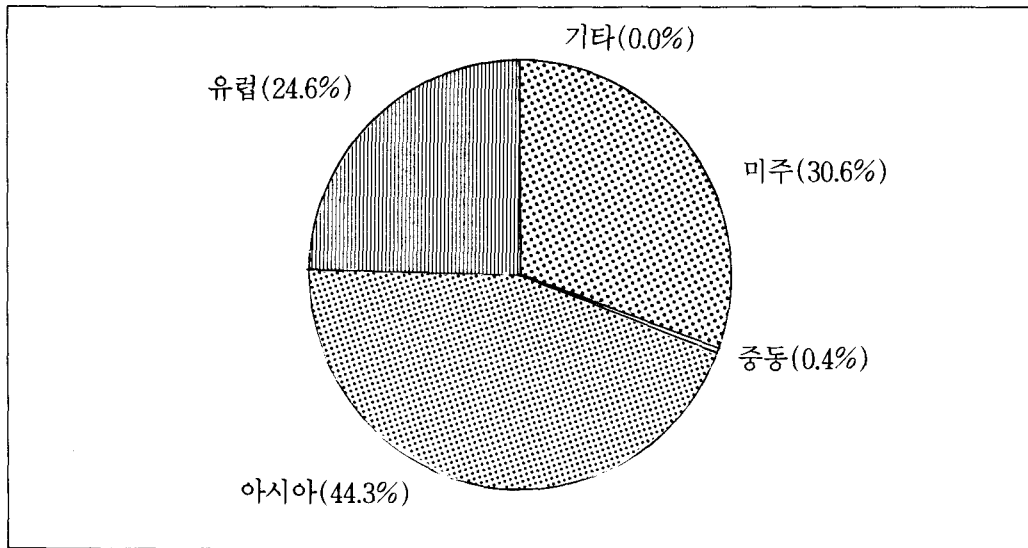
1982-1992



1993-1994

資料 : 〈圖 II-1〉과 같음

〈圖 II-6〉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地域別 分布 (1962-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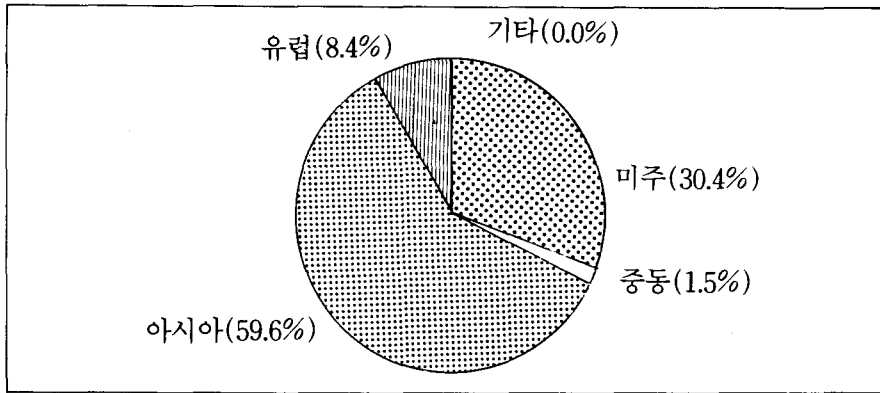
資料 : 〈圖 II-1〉과 같음

그리고 여타 국가들이 11.1%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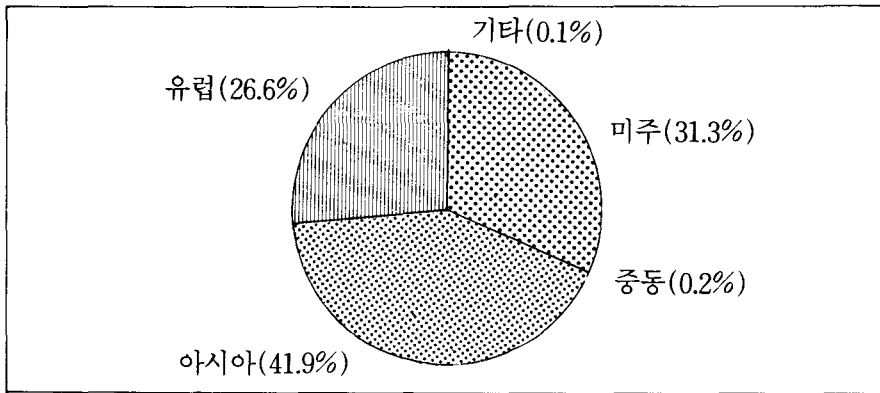
이를 다시 기간별로 나누어 〈圖 II-7〉에서 살펴 보면 미주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비중에 있어서 거의 변화가 없고,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는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유럽국가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는 점차로 늘어나 1962-1981년 동안 총 외국인투자중 8.4%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 1993-1994년에는 30.4%로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의 투자가 90년대 들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지만, 최근 엔高의 영향으로 일본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생산시설의 移轉을 늘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일본의 투자비중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2)</sup>

2) 실제로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1992-1993년 동안 총투자의 16% 수준이었다가 1993년 2억8천만 달러, 1994년 4억3천만 달러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 기간중 총투자의 30%를 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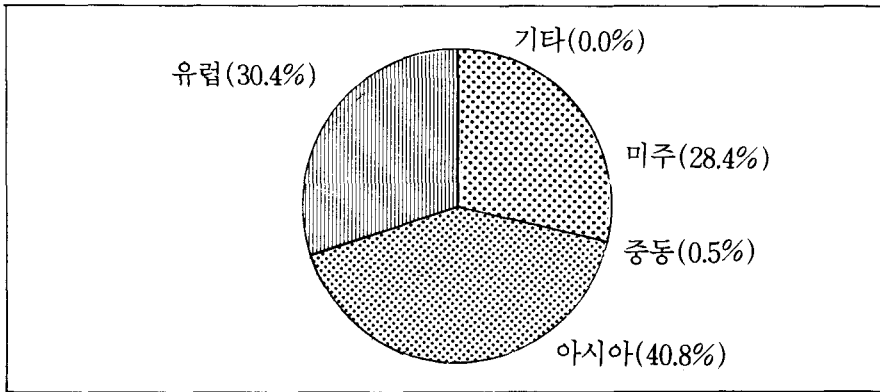
〈圖 II-7〉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地域別 分布의 變化 推移



1962-1981



1982-1992



1993-1994

資料 : 〈圖 II-1〉과 같음

### Ⅲ. 서비스업 部門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效果

앞 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들어와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업종개방의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의 開放程度는 제조업에 비해 아직도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자유화율로 본 개방정도를 살펴 보면 1995년 3월 31일 현재 제조업부문은 총 585개업종중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575개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98.3%의 자유화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부문은 총 495개업종중 80개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全面 不許되고 있어 83.8%의 자유화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추가개방의 必要性을 推論하여 보고자 한다.

자본시장의 자유화에 대한 연구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서 진행되어 왔으나 Kapur (1983)나 Edwards (1984)에서와 같이 외환 및 금융시장의 자유화나 經常計定과 資本計定の 자유화에 대한 適定順序 등 주로 間接投資 부문을 중심으로한 자본시장의 자유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왔다. 直接投資의 자유화,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의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는 Rivera-Batiz and Rivera-Batiz (1992)를 들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들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갖는 효과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sup>3)</sup>

---

3) 이외에도 Wang (1994)에서는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을 구분하여 다국적기업의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직접투자가 기술교역의 성격을 갖고 있고, 서비스업의 개방이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분석하였음.

## 1. 模型의 設定

Rivera-Batiz and Rivera-Batiz (1994)는 경제를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의 두 부문으로 나누고 제조업은 交易財部門으로서 完全競爭이 존재하지만 서비스는 非交易財部門으로서 獨占的競爭이 지배하고 자본은 각 부문에 特定的이라고 가정한다.

즉, 제조업의 생산함수는 아래와 같이 표시되는데,

$$Y = L_y^a K_y^b V^c, \quad a+b+c=1 \quad (1)$$

여기서  $Y$ 는 제조업부문의 생산,  $L_y$ 는 제조업생산에 사용된 노동,  $K_y$ 는 제조업생산에 사용된 자본,  $V$ 는 제조업생산에 사용된 서비스를 가리킨다.

한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CES 형태의 生産函數에 의해 생산되는데,

$$V = (\sum X(i)^\alpha)^{1/\alpha}, \quad 0 < \alpha < 1, \quad i=1, \dots, n \quad (2)$$

여기서  $X(i)$ 는 제조업부문에서 需要되는 각 서비스  $i$ 의 需要量을 나타내고  $n$ 은 제조업생산에 사용되는 서비스의 種類(數)를 나타낸다. Chamberlin 식의 독점적 경쟁하에서는 각 서비스의 공급량이 同一하게 되므로 서비스의 총 수요량은  $X_y = nX(i)$ 로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위의 (2)식은  $V = X_y n^{(1-\alpha)/\alpha}$  로 표시될 수 있다.

이제 제조업부문의 생산업자의 利潤極大化條件에 의해 賃金水準과 제조업부문의 자본에 대한 報酬水準(rental rate)을 구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의 식 (3)과 (4)로 표시된다.

$$W = n^{c(1-\alpha)/\alpha} a P_y L_y^{a-1} K_y^b X_y^c \quad (3)$$

$$r_y = n^{c(1-\alpha)/\alpha} b P_y L_y^a K_y^{a-1} X_y^c \quad (4)$$

여기서 제조업부문의 임금과 자본에 대한 報酬는 서비스의 수요량( $X_y$ )과 종류( $n$ )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부문을 좀더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생산에 노동과 자본이 투입된다고 하고, 각 서비스 생산업자당 單位 勞動投入量을  $\beta$ , 固定資本投入量을  $\mu$ 라고 하면, 각 서비스 생산업자의 總費用은 다음의 (5)와 같다.

$$C(i) = \mu r_s + \beta X(i)W \quad (5)$$

여기서  $r_s$ 는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자본에 대한 보수를 가리킨다. 여기에 限界 收入(marginal revenue)과 限界費用(marginal cost)이 같다는 이윤극대화 조건을 적용하고, Dixit-Stiglitz (1977)에서와 같이 독점적경쟁下에서 서비스에 대한 需要의 價格彈力性( $\epsilon$ )이  $1/(1-\alpha)$ 로 표시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서비스의 가격은 다음의 (6)과 같이 결정된다<sup>4)</sup>.

$$P(i) = \alpha^{-1} \beta w \quad (6)$$

한편 제조업 부문의 완전경쟁 조건에 의해 서비스의 均衡生産量은 다음의 (7)과 같다.

$$X(i) = \alpha \mu r_s / (1-\alpha) \beta W \quad (7)$$

4) 여기서  $\alpha$ 의 값이 커질수록 각 서비스간의 대체성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의 종류(수)는 서비스업 부문의 자본시장에서의 수요·공급관계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데 다음의 (8)과 같다.

$$n = K_s / \mu \quad (8)$$

이것은 서비스의 종류(수)는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資本供給이 증가할수록, 또는 固定資本投入量이 작을수록 많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서비스의 총공급량은 다음의 (9)와 같이 표시된다.

$$X_y = nX(i) = (\alpha c/a \beta)L_y \quad (9)$$

이제 이상의 식들로부터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자본에 대한 報酬를 도출하면 다음의 (10)과 같다.

$$r_s = c(1 - \alpha)WL_y / aK_s \quad (10)$$

마지막으로 (11)과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완전경쟁이 完全雇傭을 보장한다고 가정하면,

$$L_y + n\beta X(i) = L \quad (11)$$

식 (3), (4)와 (6)~(11) 등 8개식으로  $W$ ,  $r_s$ ,  $L_y$ ,  $r_s$ ,  $X(i)$ ,  $n$ ,  $X_y$ ,  $P(i)$ , 등 8개의 內生變數를 결정짓는 模型이 완성된다.

## 2. 서비스업 部門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效果

식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規模의 經濟가 있는 獨占的 競爭의 구조하에서 서비스업 部門에 대한 外國인직접투자의 流入은 서비스의 種類(수)를 증가시킨다.<sup>5)</sup> 그리고 이것이 다시 제조업부문의 生産性을 向上시키는 外部效果 작용을 일으켜서 厚生을 增大시키게 된다.

이를 좀 더 엄밀히 알아보기 위해 위의 식 (3), (4), (10)에 있는  $W$ ,  $K_y$ ,  $K_s$ 의 縮約式을 구해 보면 다음의 식 (12)-(14)와 같다.

$$W = W_0 L^{-b} K_s^{c(1-\alpha)/\alpha} K_y^b \quad (12)$$

$$r_y = r_{0y} L^{1-b} K_s^{c(1-\alpha)/\alpha} K_y^{b-1} \quad (13)$$

$$r_s = r_{0s} L^{1-b} K_s^{c(1-\alpha)/\alpha-1} K_y^b \quad (14)$$

이제  $K_s$ 에 대하여 微分을 한 후 그 變化率을 구하면 아래 (15)-(17)과 같다.

$$\hat{W} = [c(1-\alpha)/\alpha] \hat{K}_s \quad (15)$$

$$\hat{r}_y = [c(1-\alpha)/\alpha] \hat{K}_s \quad (16)$$

$$\hat{r}_s = [-1+c(1-\alpha)/\alpha] \hat{K}_s \quad (17)$$

5)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부문에 대한 外國인직접투자의 유입은 이 部門의 자본에 대한 보수를 감소시켜 각 서비스 生産자의 最適生産량을 동일한 비율로 감소시키므로 서비스 산업 전체의 總生産량에는 變化가 없다. Rivera-Batiz & Rivera-Batiz (1992)의 식 (18)과 (19) 참조.

한편, 國民所得이  $I = W_L + r_y K_y + r_s K_s$  로 구성된다고 정의하면 그 變化率은 아래 식 (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ot{I} = \theta_L \dot{W} + \theta_{ky} \dot{r}_y + \theta_{ks} \dot{r}_s \quad (18)$$

여기서  $\theta$ 는 총 國民所得중 각 生産要素가 차지하는 分配率을 나타낸다. 식 (18)에 위의 (15)-(17)을 대입하면,

$$\dot{I} = [c(1-\alpha)/\alpha - r_s K_s / \Gamma] \dot{K}_s \quad (19)$$

와 같이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國民所得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할 수 있다.

위의 식 (19)에서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國民所得에 대한 영향은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c(1-\alpha)/\alpha$ 는 직접투자의 유입으로 생산되는 서비스의 종류가 많아짐으로써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서 발생하는 國民所得 增加要因이고,  $(-r_s K_s / \Gamma)$ 는 서비스업 부문의 직접투자로 인해 이 부문의 자본에 대한 보수가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國民所得 減少要因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國民所得에서 서비스업 부문의 자본에 대한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보다 작으므로, 제조업생산에서 서비스 투입요소인  $c$ 가 서비스 부문의 대체탄력성의 함수로 표시되는  $\alpha/(1-\alpha)$ 보다 크기만 하면 서비스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國民所得을 증가시키게 된다.<sup>6)</sup>

따라서 제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의 比重이 클수록, 그리고 서비스부문의 代替性이 작을수록 서비스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서비스의 종류(수)를 증

6) 일례로  $c=0.3$ ,  $\alpha=0.2$  정도라면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가시킴으로써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正의 효과가 서비스업 部門의 자본에 대한 보수를 감소시키는 負의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게 되어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sup>7)</sup>

---

7) 이 모형에서 제조업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서비스의 종류(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어떤 외부효과도 일으키지 않으므로, 후생증대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나, 제조업부문에서도 독점적경쟁에 따른 제품차별화가 존재한다면, 외국인직접투자로 제조업부문의 생산제품종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효용이 증대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貿易障壁 등의 歪曲要因이 존재한다면 제조업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오히려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Brecher and Diaz-Alejandro (1977)와 Bhagwati and Brecher (1981) 참조.



## IV. 外國의 外國人直接投資 留保事例

### 1. 멕시코

#### 가. 概觀

멕시코는 1973년 제정된 投資振興法(Law on the Promotion of Mexican Investment)을 수정하여 1993년말 새로운 外國人投資法(Foreign Investment Law)을 제정하여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sup>8)</sup> 1973년의 법이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국내 투자는 장려하고 외국인투자는 규제하려 한 것과는 달리 1993년말 제정된 새로운 법은 멕시코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規範을 설정하고 외국인투자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멕시코의 외국인투자법은 투자와 관련된 모든 履行義務(performance requirements)를 철폐하고 금지하는 등 NAFTA에서 체결된 외국인투자제도를 적용하여 자유화하고 있다. 또한 同 법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제한적 요소를 없애고, 천연자원, 운송, 통신, 어업 및 금융부문에 있어서의 제반 규제도 철폐 또는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나 국가의 특수한 利害關係가 걸려있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또한 독점이나 정부예산에 영향을 주거나 환경·노동 또는 인권문제 등 공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분야에 대한 投機性投資의 流出入으로 야기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산업

---

8) 멕시코의 외국인투자 법은 NAFTA나 OECD회원국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공히 적용되는 것임. 다만, 금융과 같은 특정 부문에 있어서는 NAFTA회원국과 OECD회원국에게 좀더 개방폭을 확대한 투자조항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정책의 결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自國産業保護나 支援 등에 있어서 정부의 干與를 허용하기 위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sup>9)</sup>

즉 멕시코의 외국인투자법의 규정하에서 외국인투자는 통상적으로 事前認可없이 100%까지의 주식취득이 허용되나, 아래 <表 IV-1>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다음의 네가지 경우는 외국인투자를 留保하고 있다.

- 事前認可: 2,500만불이상의 자산을 가진 멕시코기업의 주식중 49%이상을 취득하려 하거나, 해상운송, 건설, 법률서비스 및 민간교육 등에 대한 지분을 49% 이상의 新規設立投資(greenfield investments)는 事前認可를 받아야만 한다.
- 외국인 所有持分 制限: 금융기관, 자동차부품, 국내신문발행 및 항공, 육로, 해상운송등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에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 내국민이나 외국인 排除條項을 지닌 멕시코기업에 한정: 휘발유소매, 방송, 신용조합 및 개발은행 등에 대한 투자는 내국민이나 외국인 排除條項을 지닌 멕시코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단, 내국민에 한정되어 있거나 외국인 소유지분에 상한이 있는 부문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은 中立的信託制度(Neutral Trust Mechanism)를 통하여 中立的株式(neutral share)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중립적 주식은 경영참여권은 없고 단지 재산상의 권리만을 갖고 있다.
- 國營事業: 석유, 전기, 핵발전, 위성통신, 우편, 철도 및 화폐제조 등은 국영사업으로 규정되어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9) Gabriel Martinez, "Inversion En El Tratado De Libre Comercio", in [Lo Negociado De TLC]참조.

〈表 IV-1〉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 유보상황 (1994년 기준)

유 보 내 용		업	종
국영사업		석유 및 1차석유화학, 전기, 핵발전 및 핵연료, 위성통신, 전신, 우편, 철도, 지폐발행 및 주조, 항만 및 공항 감시·감독	
내국민 사업영역		승객·관광객·화물 등의 도로운송(소포 및 문서송달 제외), 주유소 및 LPG판매, 라디오·TV방송, 신용조합, 개발은행, 특정전문·기술서비스, 승객·관광객·화물등의 국제간 도로운송*, 승객버스 정류장의 운영 및 기타 부수업무*	
상 한 설 정	① 10%	생산협동조합	
	② 25%	국내항공운송, 항공택시, 특수항공운송	
	③ 30%	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중개업, 증권거래전문가	
	④ 49%	보험, 채권, 환, 리스, 팩토링, 투자회사, 화약 및 무기제조, 국내간행용 신문인쇄 및 발행, 농·림·축산업, 케이블TV, 기본전화서비스, 양식업제외한 어로활동, 해상·철도운송, 선박·항공기·열차에 대한 연료공급, 자동차부품제조*, Videotext*, 건설*	
49% 초과 투자時 인가필요		견인·바지선 등의 내륙항해를 위한 항만서비스, 심해운항선박회사, 항공터미널관리, 교육서비스, 법률서비스, 신용정보회사, 신용평가회사, 보험판매인, 이동통신, 송유관건설, 석유 및 가스시추	

註 : (\*)는 점진적 자유화 계획을 수립하여 놓은 업종을 나타냄.

資料 : Foreign Investment Act, Section First, Chapter III.

나. 部門別 留保狀況

(1) 금융

멕시코는 1990년도에 은행들의 민營化와 함께 금융부문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문호를 개방하였으나,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이나 자회사의 설립은 허용하지 않고 신용조합과 개발은행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등 제한적인 수준이다. 또한 국내상업은행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30%를 초과할 수 없고 보험회사나 리스, 팩토링 및 외국환회사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49%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1993년말 NAFTA의 비준과 함께 기존의 금융관계법이 새로이 수정되어 1994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NAFTA 국가들에 대해 금융부문의 개방폭을 확대한 것이다. 즉, 캐나다와 미국의 금융기관이 일정 市場占有率을 넘지 않는 한 全額出資의 子會社를 멕시코에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경우 시장 점유율상의 제한도 2000년에는 철폐하도록 하고 있다.<sup>10)</sup> 단, 2006년까지는 외국 자본의 점유율이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잠정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추가 개방조치는 우선적으로 NAFTA 지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sup>11)</sup> 전체 OECD 회원국에 대해서는 1998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전망이다.<sup>12)</sup>

## (2) 석유 및 에너지

멕시코의 석유화학산업은 1993년 기준으로 멕시코 GDP의 5%, 총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에탄올 등의 기초제품을 생산하는 1차 석유화학부문(basic petrochemicals)은 PEMEX(Petroleos Mexicanos)라는 국영기관의 관장하에 두고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고, 1차 석유화학제품을 가공하는 2차 석유화학부문(secondary petrochemicals)에의 외국인투자는 40%까지로 제한되었었다. 1차와 2차 석유화학제품을 제외한 3차 석유화학부문(tertiary petrochemicals)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관할 부서에 등록만 하면 되게 되어왔다.

최근 멕시코는 2차 석유화학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40% 상한선을 철폐하

10) 금융부문의 각 업종에 있어서 개별 외국금융회사의 점유율 및 총 외국자본의 점유율에 대한 상한수준은 <表 IV-2> 참조.

11) 단, 자본점유율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예, 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모든 OECD 회원국들에게도 공히 적용됨.

12) 물론, 외국인직접투자 부문에서는 상호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OECD 자유화규약에 따라 OECD 회원국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자유화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통상적인 유보조치가 적용된다.

고, 1, 2차석유화학부문의 범위를 축소하며 3차 석유화학부문에 속하는 제품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고 있다.<sup>13)</sup>

〈表 IV-2〉 멕시코 金融部門에 있어서 NAFTA 金融機關에 대한 占有率上의 制限

業 種	總外國資本 占有率 上限	個別企業 占有率 上限	暫定的 세이프가드措置	
	상한선은 1994년에서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2000년 이후에는 철폐됨	1994~2000년 기간 동안만 유효함	1/1/2000~1/1/2007사이에 적용(총외국자본 점유율이 일정수준을 넘었을 때, 3년간 점유율을 동결시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銀行	8 ~ 15%	1.5%	25%	
證券	10 ~ 20%	4%	30%	
保 險	a.全額出資	6 ~ 12%	1.5%	無
	b.合作投資	※ 합작투자의 경우는 자본점유율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단, 주식보유율에 있어서 1994년에는 30%, 1998년에는 51%까지의 상한을 두고 2000년에 이르러 주식보유율상의 제한도 철폐함.		
팩토링, 리스	10 ~ 20%	無	無	
其 他	투자회사나 외국환 회사등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1994년 이후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소유투자분상에서나 시장점유율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註 : 기타에 해당하는 업종으로는 증권전문가, 투자회사, 투자관리회사, 채권회사, 일반예탁회사 및 외국환회사등이 있으며 이러한 업종에 대한 제반 제한철폐는 OECD국가들에 개도 적용됨.

資料 : "Mexico's Adherence to the Codes of Liberalisation and the Declaration and Decision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Report by the Committee on Capital Movements and Invisible Transactions and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1994. 3.

13) 그러나, 휘발유소매 등 석유유통부문은 내국민으로 국한하고, 시추나 운송용 파이프라인의 건설에 대한 49% 이상의 외국인투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적 요소가 남아 있다.

한편 公共事業으로서의 전기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1994년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産業用的 목적으로 自家發電(self generation), 協同發電(co-generation) 및 獨立的 動力生産(independent power producers)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게 되었다.

### (3) 광업

새로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국영사업으로 지정된 核燃料物質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광업 부문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49%라는 종전의 所有上限을 철폐하였다. 이것은 1999년까지는 아무런 자유화계획을 설정하여 놓지 않고 있는 NAFTA에서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 농림축산업

1992년 2월의 農業法(Agrarian Law)은 이전까지 금지되었던 농림축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를 허용하게 되었다. 단, 토지소유자는 “T-주식”이라는 특정형태의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T-주식을 통한 외국인투자는 49%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농업 부문의 신규설립투자에 대한 모든 다른 제약은 철폐되었고, 이전까지는 내국민이나 외국인 배제조항을 지닌 內國企業에 한정되어 있던 임업부문과 함께 100% 외국인투자에 개방되게 되었다.

### (5) 어업

멕시코의 어업 부문은 내국민이나 외국인 배제조항을 지닌 내국기업에 한정되어 왔었으나, 1994년 1월 海洋法(Law on Navigation)의 개정으로 淸淨水域(fresh water), 沿岸海域(coastal fishing) 및 特別經濟水域(exclusive economic zone)에서의 漁撈活動에 대해 49%까지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게 되었다.<sup>14)</sup>

## (6) 자동차산업

“國家的 供給者(national supplier)”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부품 생산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이전의 40%까지에서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49%까지로 확대되었다. 한편 “국가적 공급자(national supplier)”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에 전면 개방되어 있다.<sup>15)</sup>

## (7) 운송

멕시코의 對外交易의 대부분은 철도나 트럭 등 陸路運送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새로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중 운송업에 대한 부분도 北美 陸路運送體系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도로운송에 있어서 소포와 文書傳達業(courier service)은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자유화되었고, 승객, 관광객, 화물 등의 국제간 운송과 승객 버스정류장의 운영 및 기타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1995년 12월 18일에 이르러 49%까지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이후 2001년 1월 1일에 51%까지, 2004년 1월 1일에는 100% 전면 개방한다는 점진적인 자유화계획을 마련하고 있다.<sup>16)</sup>

철도운송에 있어서는 승객, 철도유지·개량, 철교, 보수, 단일 철도의 조직과 상업화, 내부 화물터미널의 운영 및 철도 통신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49%까지 허용되게 되었다.

항공운송의 경우는 주로 雙務協定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국내항공운송, 항공택시업, 특수항공운송 등은 25%까지의 외국인투자

14) 양식업(aquaculture)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없이 100%까지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다.

15) 외국인투자가가 국가적공급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멕시코 자동차산업에 특정 부품을 제공하고 30%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6) 그러나 국내운송에 대해서는 계속 내국인과 외국인 배제조항을 지닌 내국기업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가 허용되는 등 소폭의 자유화가 이루어졌고, 항공사 터미널의 관리에 대해서는 外國人投資委員會(National Commission of Foreign Investments: NCFI)의 인가를 조건으로 100%까지의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해상운송의 경우는 외국인투자법의 제정으로 내륙 및 연안항해를 위한 선박의 상업적 이용에 전념할 선박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49%까지 허용되었다.<sup>17)</sup> 또한 내륙항해를 위한 港灣操縱서비스(port pilot service)의 투자에 대해서도 49%까지 개방되었고, 견인, 바지선 등의 내륙항해를 위한 항만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NCFI의 인가를 조건으로 100%까지 허용되었다. 한편 외국선박회사를 위한 항만 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사전승인의 필요없이 전면 개방되었다.

#### (8) 통신

멕시코의 통신업 부문중 附加價值電氣通信서비스와 刊行物編輯은 1994년을 기해 완전 자유화되었다. 기본전화서비스 이외의 전기통신부분도 개방되었다.<sup>18)</sup>

그러나 라디오와 TV 방송은 내국인과 외국인 배제조항을 지닌 내국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기본전기통신, 케이블TV, 國內刊行用 신문의 인쇄 및 발행에 대해서는 49%의 외국인투자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 (9) 법률서비스

1994년의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법률서비스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NAFTA의 규정을 넘어서 NCFI의 인가를 조건으로 100%까지 허용되고 있다. 단, 이 경우 멕시코 內國人 법률가를 직접적으로 고용할 수는 없고, 국제법이나 외국법에 대한 법률상담만 할 수 있다.

17) 단, 관광순항선(cruise)이나 준설 또는 항만의 건설, 보존 및 운영 등의 용도는 제외됨.

18) videotext와 enhanced packet switched data 서비스의 경우는 1994년 49%까지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고 1995년 7월 1일 이후 완전 개방될 계획이다.

## (10) 교육서비스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私的 교육기관에 대한 49%이상의 외국인투자는 NCFI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기타 OECD 국가

〈表 IV-3〉에는 멕시코를 제외한 주요 OECD 국가들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留保狀況을 정리하였다. 이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및 금융서비스, 신문·방송 등의 대중매체, 항공운송, 어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대다수의 국가가 相互主義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自國經濟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특정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유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例로는 아일랜드의 소맥정제업, 일본의 피혁 및 피혁제품제조업, 스페인의 도박·복권 및 카지노, 스위스의 영화배급 및 상영 등에 대한 유보를 들 수 있다.

〈表 IV-3〉 OECD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유보 및 상호주의 적용 현황

국명	유보	상호주의 적용
호주	은행, 부동산, 신문·방송, 민간항공, 우라늄 천만호주달러 이상의 신규투자, 국적선 취득	은행 및 금융서비스
오스트리아	부동산, 은행, 회계감사, 법무서비스, 에너지 운송, 국적선 취득(25%)	은행, 증권 및 보험
벨기에	비EC회원국 투자자에 의한 공개매수 국적선 취득	보험, 관광
캐나다	캐나다 기업의 대규모 인수, 신문·방송 등 문화유산 또는 국가적 동일성 관련 활동 은 행 및 금융서비스, 보험, 항공운송, 통신, 에너지, 어업	은행
덴마크	국적선	보험
핀란드	부동산 ※인가필요 : 지점, 보험회사의 자회사, 은행 (50% 이상의 지점 또는 자회사, 20% 이상의 지분취득) 20% 이상의 국내기 업 지분취득	은행 및 금융서비스
프랑스	※사전신고필요 : 5천만프랑이상 투자 ※인가필요 : 항공운송(50%), 보험 국적선(50%)	은행 및 금융서비스, 보험 신 문, 여행 및 관광, 육상운송 및 차량임대, 광산탐사 및 개발, 원유 및 정제품의 수입 핵에너 지, 농업
독일	자본투자회사의 투자기금예치은행 항공운송(25%), 국적선, 방송	증권 및 신용기관, 항공
그리스	부동산, 광업, 항공사(49%), 국적선(49%) 텔 레비전방송(25%), 라디오방송(49%) ※인가필요 : 외국은행지점	은행, 보험
아이슬랜드	부동산, 에너지, 어업, 항공운송(49%), 국적선 외국은행지사, 국내은행(25%) ※인가필요 : 수산양식업(25%), 통신(25%) 동력집약산업외의 제조업(25%) 무역업(25%)	외국인합작회사
아일랜드	항공운송, 보험, 소맥정제업, 농업용토지 및 국적선 취득	은행 및 금융서비스, 보험 국적선 취득

〈表 IV-3〉 OECD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유보 및 상호주의 적용 현황(계속)

국명	유보	상호주의 적용
이태리	신문, 방송, 항공 국적선, 증권투자회사	은행, 보험, 액체 및 기체 탄화수소의 탐사 및 개발
일본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석유업, 피혁업 및 피혁제품제조업, 항공운송, 해운	은행, 증권
룩셈부르크	-	-
네덜란드	항공, 국적선	은행 및 금융서비스
뉴질랜드	원양어업 및 농업토지(25%) ※인가필요 : 천만 뉴질랜드 달러초과, 25% 이상 지분 취득	-
노르웨이	외국은행지점, 증권, 보험, 항공운수, 국적선 ※인가필요 : 부동산, 금융기관(1/3)	은행, 보험
포르투갈	여신기관, 보험, 여행사, 내항운송(49%) 항공운송(49%), 텔레비전방송(15%), 통신(25%)	-
스페인	항공운송, 방송, 전화 이외의 통신서비스 전 략광물, 도박, 복권 및 카지노	은행 및 금융서비스, 보험
스웨덴	국적항공기취득, 항공연안무역 및 국제항공 운송 국적선 취득(50%), ※인가필요 : 어업(50%), 운송, 통신	-
스위스	영화배급 및 상영	은행 및 금융서비스
터키	광업 ※인가필요 : 석유개발 및 투자, 석유정제운 송 및 저장, 은행, 기타 미화 5만불미 만 또는 5천만불 이상의 투자	은행 및 금융서비스, 보험
영국	항공운송, 방송, 국적선 취득	은행 및 금융서비스, 보험 합병 및 매수
미국	원자력에너지, 항공운송, 해운, 해양열에너지, 수력발전, 지열증기, 채광, 배타적 경제구역 에서의 어로 및 심해항구사업 ※인가필요 : 방송, 대중교통, 항공료, 지상 라디오 방송국 및 「통신위성공사」	-

註 :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비율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해 유보함을 나타냄.

資料 :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부속서 B와E, 1995년 2월기준.

### 3. 主要 개발도상국가

OECD 회원국이외의 개발도상국중 주요국에 있어서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제한 내용은 <表 IV-4>에 나와 있다. 이를 보면 모든 나라에서 國家安保와 관련된 업종이나 방송 등 공공사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은행 등 금융부문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투자를 유보하고 있다. 그밖에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으로 대만의 경우는 공공안전 및 美風良俗에 위배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기술수준이 낮고 투자기간이 짧은 반면 이익율이 높은 부문과 선진기술도입 효과가 극히 미미한 부문이라고 표시하여 자국 산업보호 측면이나 경제개발 정책과 연계하여 외국인투자를 選別的으로 도입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表 IV-4〉 주요 개발도상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유보현황

국명	제한업종	비고
아르헨티나	국가안보 및 국방, 라디오·TV방송, 신문·잡지	-
브라질	국내항공, 연안해운, 신문·방송·출판, 대체용 알콜생산, 원자력개발, 자국상업은행, 철강*, 석유화학*, 통신설비*, 전력*	허용업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외국자본의 참여비율을 49% 이하로 규제
칠레	원유개발, 정제, 판매, 원자력개발, 연안운송 회소광물의 채광 및 개발, TV방송, 기타 국가안보관련사업	-
홍콩	방송(≤49%)	-
대만	공공안전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사업, 공공사업 금융·보험산업, 신문출판사업	-
싱가포르	국내은행(≤40%), 항공, 해운, 신문발행 전기·가스·수도	-
중국	일부서비스업, (내구)소비재 완제품생산, 기술수준이 낮고 투자기간이 짧은 반면 이익율이 높은 부분, 선진기술도입 효과가 극히 미미한 부분	-
말레이시아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종이포장재 제조업* 전기·전자·통신기기 제조업*, 조립금속*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유보내용은 자료 미비
인도네시아	의약품제조업, 버스·택시, 국내해운, 항공 소매업, 광고업, 방송	의약품제조업의 경우는 65% 이상의 수출이행의무 조건으로 외국인투자 허용
필리핀	지방은행, 방송, 소매업, 농업토지의 이전	-

註 : (\*) 표시업종은 합작기업의 형태로만 허용됨.

資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간행 각국 편람 및 Guide to the Investment Regimes of the APEC Member Economies, 1995.



## V.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開放現況과 追加開放方案

###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開放現況

#### (1) 外國人直接投資 對象業種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業種分類는 『韓國標準産業分類(통계청 고시)』의 細細分類(5단위)에 의하고 있으며, 同 分類에 의한 총 1,195개 업종중 국영우편업, 중앙은행, 공공행정, 외무, 국방, 교육기관, 노동조합, 종교 및 정치단체 등 48개 업종을 제외한 1,147개 업종이 외국인투자대상업종으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의 제4조에 게시되어 있다.<sup>19)</sup>

이러한 외국인투자대상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여부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만을 선정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고시하는 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List에 없는 업종은 외국인투자 자유업종으로서 외국인의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분야이다.

〈表 V-1〉 외국인투자대상업종 현황(1995. 3. 31. 현재)

(단위 : 개)

구분	업종수	불허업종	허용업종
제조업	585	10	575
서비스	495	80	415
농·어·광업	68	18	50
계	1,148	108	1,040

19) 47개의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의 별표1에 나와있음.

## (2) 제한업종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다음 <表 V-2>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구체적인 업종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고시한다.<sup>20)</sup> 1995년 3월 31일 현재 외자도입법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제한업종 현황은 <表 V-3>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총 150개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중 108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전면 허용되지 않고 있고 나머지 42개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 허용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외국인투자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sup>21)22)</sup> 이들 제한업종의 대부분은 외국인투자개방 예시 계획에 따라 1997년까지 자유업종으로 전환되거나 부분허용 또는 허용범위가 추가로 확대될 예정이다.

&lt;表 V-2&gt;

## 외국인투자 제한 기준

-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영위하는 공익사업 : 상·하수도사업, 우편업, 철도운수업, 담배제조업 등
-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는 사업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해사업 등
-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사업 : 도박장 운영업 등
- 농어민의 생업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사업 : 곡류작물생산업, 연근해어업 등
- 초기발전단계의 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국민경제상 일정기간 외국인투자의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기타 공공기능적 성격이 강한 업종으로서 외국인투자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문발행업, 텔레비전방송업, 라디오방송업 등

20) 「외자도입법」 제9조와 同 시행령 제10조 참조.

21) 1995. 3. 31. 현재 108개의 제한업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아니하나, 제한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인가를 이미 받은 기업이 그 사업에 증액 투자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가능하다.

22) 외자도입법상 제한을 받는 150개업종이외에도 36개업종에 대하여 합작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외자도입법외에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추가로 9개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表 V-3〉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제한업종 현황(1995. 3. 31.현재)

	주요 제한업종	업종수
농수산업	작물, 축산, 어업	21 (4)
광업	토자석채취업	3 (2)
제조업	도축업, 가공도살업, 담배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화약제조업	12 (2)
전기·가스·수도업	발전업, 수도사업	2
도·소매업	주유소, 가스충전소, 곡물·고기 도소매업, 상품연쇄화사업, 무역업, 예술품 및 골동품소매업	15 (8)
숙박·음식점업	주점업	6
운송·통신업	철도운송, 자동차운송, 도로화물운송, 해상운송, 내륙수상운송, 항공운송, 화물운송대행, 우편물송달, 전신·전화	29 (11)
금융·보험업	국내은행, 상호금융, 신용판매금융, 투자회사, 신탁회사, 생명보험, 의료보험, 재보험, 증권거래, 보험대리 및 중개, 보험감정	21 (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임대·중개·감정,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인력공급, 고용알선, 탐정, 경호, 신용조사	22 (1)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강습소, 방송, 오락·서비스(골프장, 경마장, 도박장, 해수욕장 등), 점술, 가사서비스	19 (5)
계		150 (42)

註 : ( )안의 숫자는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충족할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수를 가리킴.

위의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이외에도 국내기업이나 면허소지자와 합작할 경우에만 외국인투자가 허용이 되는 업종이 있는데, 이러한 합작의무업종은 아래 〈表 V-4〉에 나와 있다. 이들 합작의무업종은 주정·소주제조, 상해·손해보험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1996년 1월 1일을 기해 이러한 합작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합작의무업종이나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업종이외에도 다

〈表 V-4〉 합작의무업종 현황(1995. 3. 31.현재)

내 용	업 종
동종면허 소지자와의 합작의무 (30개)	주정·소주제조*, 산업설비조립·설치, 폐기물처리시설 공사, 철골·콘크리트공사, 배관·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리·창호·도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잠수·수중공사, 건설장비 임대업 등
기존업체에 합작참여의무 (6개)	곡물도정업*, 곡물제분업, 전분 및 전분제품제조*, 두부 및 유사식품제조*, 상해보험*, 손해보험*

註 : (\*)표시한 업종은 1996. 1. 1. 이후에도 합작의무가 계속 남아있는 업종을 나타냄.

른 개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업종과 관계 법률 및 제한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表 V-5〉와 같다.

〈表 V-5〉 외자도입법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및 제한내용(1995. 3. 31.현재)

업 종	제 한 내 용	관계법률
수생동·식물 종묘생산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수생동물 냉동품제조업, 기타 수생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성유지제조업,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이 수산업의 면허·허가를 받고자 할 때 국회의 동의 필요	수산업법
원유정제처리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sup>A</sup> , 기타 석유정제분획물 재처리업 <sup>B</sup>	외국인 투자비율의 상한 50%	석유사업법

註 : <sup>A</sup>중 1일 생산능력이 2,000 배럴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한적용.

<sup>B</sup>중 석유왁스제조업 및 1일생산능력이 2,000배럴 이하인 아스팔트 제조업은 제외.

## 2. 部門別 制限 狀況과 開放計劃

### (1) 농수산업

농수산업 부문에서는 현재 부분허용되는 6개업종을 포함하여 총 23개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이중 수생동식물 종묘생산업과 어업관련 서비스업은 수산업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서 이들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농수산업 부문의 제한 업종들에 대한 개방일정은 아래 <表 V-6>에 나와 있는데 1996년 1월 1일에는 화훼작물생산을 비롯한 3개 업종이 개방되고, 1997년 1월 1일에는 현재 부분허용되고 있는 종묘생산업과 원예관련서비스업이 전면개방되는 등 전부 10개 업종이 개방될 예정이다. 그러나 육우사육업, 보통작물생산업, 연근해어업 등 10개 업종은 1997년이후에도 계속 외국인투자가 제한될 계획이다.<sup>23)</sup>

<表 V-6> 농수산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개방계획

1996. 1. 1. 개방업종	1997. 1. 1. 개방업종	97년 이후 제한지속업종
화훼작물생산업	기타 작물생산업	보통작물생산업, 육우사육업
음료 및 향신작물생산업	채소작물생산업, *종묘생산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기타 가금사육업	멜론 및 기타 초본성과실생산업, 시설작물생산업, 낙농업	일반해면어업, 일반내수면어업
	양돈업, 양계업, 복합농업	*해면양식업, *내수면양식업
	*원예관련 서비스업	*수생동식물 종묘생산업
		*어업관련서비스업

註 : \*는 1995년 3월 31일 현재 외국인투자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게시된 개방시기 이후에 전면 개방됨을 나타냄.

23) 단, 해면양식업중 어류 및 진주양식과 내수면양식업중 뱀장어양식이외의 양식업은 1997년이후에도 계속 허용이 될 계획이다.

## (2) 광업

광업 부문에서는 현재 건설용 쇄석 생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전면 불허되고 있고, 건설용 석재 채취업중 대리석 채취업과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채취업중 외국인투자가 50%미만인 하천골재채취업에 대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1월 1일을 기해 광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 (3) 제조업

제조업의 경우에는 생물학적제제 제조업과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총 23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제한을 받고 있다. 이중에서 수생동물 냉동품제조업 등 수산업제품관련 4개업종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제한을 받고 있고, 원유정제처리업, 운할유 및 그리스 제조업과 기타 석유정제분획물 재처리업의 3개 업종은 석유사업법에 의해 외국인투자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주정제조업, 소주제조업 등 음식료품제조관련 6개업종에 대해서는 합작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개방계획은 <表 V-7>에 나와 있듯이 1996년 1월 1일에 도축업과 가공도살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전면 허용되고 읍셋, 경인쇄업에 대해서는 일정 외국인지분이하에 대해 부분개방되며 1997년 1월 1일에는 서적출판업이 부분개방되고 경인쇄업에 대한 부분개방이 확대될 계획이다. 그러나 1997년 이후에도 담배제품 제조업, 신문,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전면불허되고, 그외 17개 업종에 대해서도 계속 외국인투자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 (4) 전기·가스·수도업

전기·가스·수도업 부문에서는 현재 발전업과 수도사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表 V-7>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개방계획

1996. 1. 1. 개방	1997. 1. 1. 개방	97년 이후 제한지속업종
도축업, 가공도살업 기타 출판업 읍셋인쇄업*(≤50%) 경인쇄업*(≤50%) 기타 상업인쇄업 ●곡물제분업	서적출판업*(≤50%) 경인쇄업*(≤50%)	담배제품제조업, 신문발행업 정기간행물 발행업 ●생물학적제제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50%) ●윤활유·그리스 제조업(≤50%) ●기타 석유정제분획물 재처리업(≤50%) ●수생동물 냉동품제조업 ●기타 수생동물가공·저장처리업 ●동물성유지제조업 ●해조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주정제조업, ●소주제조업, ●곡물도정업 ●전분 및 유사제품제조업 ●두부 및 유사제품제조업 서적출판업*, 읍셋인쇄업*, 경인쇄업*

註 : <表 V-6>과 동일. \*는 부분개방 또는 개방확대(기존 부분허용된 ●표시업종에 대해서)를 나타냄. ( )안의 비율은 외국인투자비율의 상한선을 가리킴.

제한되고 있고, 발전업에 대해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지분 50%미만까지는 허용하는 부분개방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5) 도·소매업

도·소매업 부문에서는 현재 주유소 등 총 15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제한을 받고 있다. 이중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우선 곡물 및 종자도매업중 곡물도매업을 제외한 사업에 한해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고 있고, 6개의 무역업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최근 사업년도의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 사업내용이 제한받을 수 있으며, 상품연쇄화사업은 점포수가 20개 이내이고 점포당 賣場面積이 3,000m<sup>2</sup>

미만일 경우에만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도·소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개방계획은 아래 <表 V-8>에 나와 있다. 비료도매업과 고기소매업 등이 1996년에 개방되고 무역업관련 6개업종이 1997년에 개방되나 주유소운영업, 고기도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소매업, 곡물도매업과 곡물소매업중 상품연쇄화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등 5개업종에 대해서는 1997년 이후에도 계속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않기로 되어있다.

<表 V-8> 도·소매업부문의 외국인투자 개방계획

1996. 1. 1. 개방	1997. 1. 1. 개방	97년 이후 제한지속업종
차량용가스충전업 *(〈50%) 비료도매업 ●상품연쇄화사업 곡물소매업*, 고기소매업	차량용가스충전업, ●종합무역업 ●농축산물·음식료품 및 담배무역업, ●가정용품무역업 ●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무역업 ●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무역업, ●기타 무역업	주유소운영업 ●곡물 및 종자도매업 고기도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소매업 곡물소매업*

註 : <表 V-7>과 동일

#### (6) 숙박·음식점업

숙박·음식점업 부문에서는 일반유흥점업, 무도유흥주점업, 한국식 유흥주점업, 극장식 주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주점업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업 등 6개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전면 불허되고 있고 1997년 이후에도 계속 불허될 전망이다.

#### (7) 운송·통신업

운송·통신업 부문에서는 현재 부분적으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고 있는 11개업종을 포함하여 총 29개업종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가 제한을 받고 있다. 그중 시외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우편물송달업 등 11개업종은 1996년에 전면 개방될

것이고 일반전국화물자동차운송업과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업은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부분개방 또는 사업허용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간철도운송업등 3개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997년에 이르러 전면 개방될 계획이지만 시내버스운송업, 내항여객, 화물운송업, 유무선전신·전화업 등 15개업종은 1997년이후에도 계속 외국인투자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表 V-9〉 운송·통신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개방계획

1996. 1. 1. 개방	1997. 1. 1. 개방	97년 이후 제한지속업종
시외버스운송업	도시간철도운송업	시내버스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
택시운송업	구역내철도운송업	내항화물운송업, *외항화물운송업
정기노선도로화물운송업	*항공기임대사업	*기타 해상운송업
특수화물자동차운송업	((<50%))	*정기항공운송업(≤20%)
일반전국화물자동차운송업*		*부정기항공운송업(≤20%)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업*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50%)
일반구역 용달화물자동차운송업		*항공기지상관리서비스업(<50%)
내륙수상여객운송업		기타 항공운수유지서비스업
내륙수상화물운송업		유선전신·전화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운영업		*무선전신·전화업
화물자동차터미널시설운영업		기타 전기통신업
*화물운송대행업		일반전국화물자동차운송업*
*우편물송달업(≤50%)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업*

註 : 〈表 V-7〉과 동일.

(8) 금융·보험업

금융·보험업 부문에서는 외국인투자가 부분허용되는 9개업종을 비롯하여 총 21개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제한을 받고 있다. 부분적으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업종으로는 우선 국내은행에 있어서 일반은행에 한하여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고, 투자회사에 있어서는 Venture Capital회사 및 단기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

사에 한해 허용되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증권신탁업의 외국인투자는 국내의 기존 증권투자신탁회사에 10%이내(외국투자가 1인당 5%이내)에서 출자할 경우에 허용된다.

생명보험업의 경우는 외국인투자자가 합작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에 따라 생명보험사업의 내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보험업의 경우는 생명·손해보험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한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증권거래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국내의 기존 증권회사에 합작투자하는 경우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하, 합작증권회사를 신설하는 경우는 40%에서 50%미만이어야 하고 그외에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한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중 투자자문업에 한하여 국내 기존투자자문회사에 총 10%이내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고 있고, 보험대리 및 중개업에 있어서는 전속 대리점에 한하여 내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한편 상

〈表 V-10〉 금융·보험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개방계획

1996. 1. 1. 개방	1997. 1. 1. 개방	97년 이후 제한지속업종
●신탁회사 (≤10%)*	신용판매 금융업	●국내은행, 기타일반금융업, 상호금융업 기타 여신금융업, ●투자회사, 안정기금관리회사 기타금융업, ●생명보험업, 보증보험업 의료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생명보험 재보험업, 비생명보험 재보험업 ●증권거래업(≤50%), 상품교환업,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10%) ●보험대리 및 중개업, 보험감정업,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 ●상해보험업, ●손해보험업 신탁회사*

註 : 〈表 V-7〉과 동일

해보험업과 손해보험업에 대해서는 국내 기존업체에 합작참여를 할 조건으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보험업 부문의 개방계획은 <表 V-10>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증권투자신탁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범위가 1996년에 확대되고 신용판매업이 1997년에 개방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현행 제반 제한이 지속되어 1997년 이후에도 총 2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제한을 받을 예정이다.

(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현재 신용조사업중 신용평가업에 한하여 외국인투자 비율이 10%이하일 조건으로 부분허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21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전면 불허되고 있다.

이 부문의 외국인투자 개방계획을 보면 부동산 중개·감정·관리 등 부동산관련서비스업과 공인회계사 등 회계관련서비스업 등 8개 업종이 1996년에 전면 개방될 것이고 고용알선업은 1996년부터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직종에 한하여 부

<表 V-1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개방계획

1996. 1. 1. 개방	1997. 1. 1. 개방	97년 이후 제한지속업종
부동산중개업, 감정업, 관리업 기타 부동산관련서비스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타 회계관련서비스업 고용알선업*	경호 및 경비업*( $<50\%$ ) ●신용조사업( $\leq 10\%$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 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 분양공급업 비주거용건물 분양공급업 토지개발공급업 변호사업, 법무사업, 기타 법무관련서비스업 인력공급업, 탐정업, 고용알선업* 경호 및 경비업*, 신용조사업*

註 : <表 V-7>과 동일

분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1997년부터는 경호 및 경비업중 경비업에 한하여 외국인지분이 50%미만 이고 임원이 내국인일 조건으로 부분개방되고 신용조사업중 신용평가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참여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건물임대업 등의 부동산임대업 과 토지개발공급업, 변호사 등 법무관련서비스업, 인력공급업, 탐정업 등에 대해서는 1997년이후에도 계속 외국인투자가 제한될 예정이다.

#### (10)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는 부분허용 5개업종을 포함하 여 총 19개 업종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부분허용되는 업종으로는 전문강습소와 일반강습소의 경우 외국인투자 비율이 각각 50%미만과 49%이하에 한해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고, 유선방송업의 경우는 프로그램공급업에 한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15%이하인 경우에 허용되며,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운영업중 박물관을 제외하고서 허용되고 골프장운영업도 제주도의 중문단지내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투자가 허용되 고 있다.

〈表 V-12〉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개방계획

1996. 1. 1. 개방	1997. 1. 1. 개방	97년 이후 제한지속업종
●일반강습소(≤49%)* 유원지운영업 해수욕장운영업 낚시장운영업 음식점업, 육탕업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유선방송업 (≤15%)*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운영업	●전문강습소(<50%)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제공업, 경마 및 유사경기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기타 오락관련사업, 점술업 일반강습소*, 유선방송업*

註 : 〈表 V-7〉과 동일

아래 <表 V-12>의 개방계획을 보면 1996년부터 유원지 등의 운영업과 예식장업, 가사서비스업 등이 전면 개방되고 일반강습소도 개방이 확대되며 1997년부터는 유선방송업에 대한 개방이 확대되고 박물관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그러나 전문강습소 및 방송업과 경마장, 도박장 등의 오락관련사업, 그리고 점술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997년이후에도 계속 제한될 예정이다.

### 3.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追加開放方案

<表 V-13>에는 우리나라의 1997년 이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지속되는 업종과 멕시코 및 기타 OECD 국가들의 유보사례를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97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지속되는 업종은 총 105개에 달한다. 이중 서비스업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총 105개업종중 56개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계속 전면 불허될 예정이다.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의 추가개방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추가개방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업종을 개방하고 어떤 업종은 계속 유보할 것이며 또한 개방업종중에서도 어떤 업종을 먼저 개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準據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후생증대 등의 국민경제적 측면과 정치사회적인 측면을 모두 생각할 수 있는데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sup>24)</sup>

24) 이들 각 기준에 따라 개방방법을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국민소득 증대효과가 큰 업종은 조기 개방, 국내 경쟁력이 미약한 업종은 제한적 조기개방, 사회문화적 파급영향이 큰 업종은 개방유보, 공공성이 큰 업종은 개방불가의 방향으로 분류하였음.

〈表 V-13〉 1997년이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과 국제간 비교

구 분	우리나라 제한업종	멕시코 유보상황	기타 OECD국가 유보상황
농수산업 10 (6)	보통작물생산업, 육우사육법 근해어업, 연안어업, 일반해면어업 일반내수면어업, ●해면양식업 ●내수면양식업, ●수생동식물 종묘생산업 ●어업관련서비스업	농축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취득, 연근해어업(≤49%) 농림축산업(≤49%)	캐나다·아이슬란드 (어업) 일본(농업, 어업) 아일랜드(농업용토지) 뉴질랜드(원양어업 및 농 업토지: <25%), 스웨덴(어업:<50%,※인 가) 미국(배타적 경제구 역에서의 어로)
제 조 업 20 (3)	담배제품제조업, 신문발행업 정기간행물 발행업 ●생물학적제제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50%) ●윤활유·그리스 제조업(≤50%) ●기타 석유정제분획물 재처리업(≤50%) ●수생동물 냉동품제조업 ●기타 수생동물가공·저장 처리업, ●동물성유지제조업 ●해조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주정제조업, ●소주제조업 ●곡물도정업, ●전분 및 유사제품 제조업, ●두부 및 유사제품 제조업 서적출판업*, 읍셋인쇄업*, 경인쇄업*	자동차부품제조 (≤49%) 신문발행업(≤49%) 화약·무기제조 (≤49%)	아이슬란드(동력집약적 산업 이외의 제조업: <25%, ※인가) 아일랜드(소맥정제업) 일본(피혁), 호주· 이태리·캐나다(신문)

〈表 V-13〉 1997년이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과 국제간 비교(계속)

구 분	우리나라 제한업종	멕시코 유보상황	기타 OECD국가 유보상황
전기·가스 ·수도업 2 (1)	발전업*( $<50\%$ ) 수도사업	전기, 핵발전 석유 및 1차석유화학	캐나다·오스트리아· 아이슬랜드(에너지), 일본·터키(석유), 미국(원자력, 해양열 에너지, 수력발전)
도·소매업 5 (3)	주유소운영업 ●곡물 및 종자도매업, 고기도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소매업 곡물소매업*	주유소 및 LPG판매 선박·항공기·열차에 대한 연료공급( $\leq 49\%$ )	스위스(영화배급 및 상영)
숙박· 음식점업 6 (6)	일반유흥점업, 무도유흥점업 한국식유흥점업, 극장식주점 외국인전용유흥점업, 기타 주점업	-	-
운송· 통신업 15 (6)	시내버스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 내항화물운송업, ●외항화물운송 업 ●기타 해상운송업 ●정기항공운송업( $\leq 20\%$ ) ●부정기항공운송업( $\leq 20\%$ )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 $<50\%$ ) ●항공기지상관리서비스업( $<50\%$ ) 기타항공운수유지서비스업 유선전신·전화업 ●무선전신·전화업 기타 전기통신업 일반전국화물자동차운송업*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업*	위성통신, 전신, 우편 항만 및 공항 감시감독 도로운송 국내항공운송( $\leq 25\%$ ) 기본전화서비스 ( $\leq 49\%$ ) 해상·철도운송( $\leq 49\%$ ) 이동통신( $\leq 49\%$ ,※인가) 항만서비스 ( $\leq 49\%$ ,※인가) 항공터미널관리 ( $\leq 49\%$ ,※인가)	오스트리아(운송), 호주· 아이슬랜드·이태리·스웨 덴·영국·그리스·네덜 란드·노르웨이(항공), 캐나다·아이슬랜드(항 공, 통신), 프랑스(항공: $<50\%$ , ※인가), 독일(항 공: $\leq 25\%$ ) 미국·일본· 포르투갈(항공, 해운), 스 페인(항공, 전화이외의 통 신), 포르투갈(여행사·통 신), 스웨덴(운송, 통신, ※인가), 호주 등 15개국 가(국적선 취득)

〈表 V-13〉 1997년 이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과 국제간 비교(계속)

구 분	우리나라 제한업종	멕시코 유보상황	기타 OECD국가 유보상황
금융· 보험업 2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은행, 기타일반금융업</li> <li>상호금융업, 기타 여신금융업</li> <li>●투자회사, 안정기금관리회사</li> <li>기타금융업, ●생명보험업</li> <li>보증보험업, 의료보험업</li> <li>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li> <li>생명보험 재보험업, 비생명보험 재보험업</li> <li>●증권거래업(≤50%), 상품교환업,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10%), ●보험대리 및 중개업, 보험감정업,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 ●상해보험업, ●손해보험업, 신탁회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조합, 개발은행</li> <li>은행(≤30%)</li> <li>금융지주회사(≤30%)</li> <li>증권중개업</li> <li>증권거래 전문가(≤30%)</li> <li>보험(≤49%), 채권(≤49%)</li> <li>환(≤49%), 리스(≤49%)</li> <li>팩토링(≤49%)</li> <li>투자회사(≤49%)</li> <li>보험판매인(≤49%,※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일(자본투자회사의 투자기금 예치은행)</li> <li>그외 금융·보험부문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가 상호주의 적용(단, 아이슬란드·룩셈부르크·포르투갈·뉴질랜드·스웨덴·미국 제외)</li> </ul>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용건물임대업</li> <li>비주거용 건물임대업</li> <li>기타 부동산임대업</li> <li>주거용건물 분양공급업</li> <li>비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li> <li>토지개발공급업</li> <li>변호사업, 법무사업</li> <li>기타 법무관련서비스업</li> <li>인력공급업, 탐정업, 고용알선업*</li> <li>경호 및 경비업*, 신용조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전문·기술서비스</li> <li>법률서비스(≤49%,※인가)</li> <li>신용정보(≤49%,※인가)</li> <li>신용평가회사(≤49%,※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주·핀란드·그리스·아이슬란드·노르웨이(부동산) 오스트리아(부동산, 회계감사, 법무서비스)</li> </ul>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강습소(50%)</li> <li>라디오, 텔레비전방송업, 뉴스제공업</li> <li>경마 및 유사경기장운영업</li> <li>●골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li> <li>기타 오락관련사업, 점술업</li> <li>일반강습소*, 유선방송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라디오·TV방송</li> <li>교육서비스(≤49%,※인가)</li> <li>케이블TV(≤4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페인(도박, 복권 및 카지노)</li> <li>호주·캐나다·독일·그리스·이태리·스페인·영국·미국·포르투갈(방송)</li> </ul>

註 : 〈表 V-7〉과 동일.

업종구분란의 ( )안의 숫자는 외국인투자가 전면불허되는 업종수를 가리킴. ( )안의 숫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의 상한선을 가리키고, (※인가)는 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상한선을 초과하는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것을 나타냄.

- 국민경제 전체의 厚生이나 所得增大 效果
- 국내 競爭力 狀況 및 豫想被害
- 社會文化的 波及影響<sup>25)</sup>
- 기타 公共性 및 特殊狀況

우선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가 갖는 국민소득 증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개방을 하려면 앞의 제3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입비율이나 공헌정도가 크고 또한 대체성이 작은 부문부터 개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sup>26)</sup> 이러한 점에서 볼 때 <表 V-13>에서 1997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가 전면 불허되는 56개업종중에서 우선적으로 개방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유소운영업, 운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비주거용건물임대 및 분양공급업, 토지개발공급업, 변호사 및 법무관련업, 인력공급업 등을 들 수 있다.<sup>27)</sup>

이중에서 국내업계의 경쟁력이 미약하여 외국인투자가 개방될 경우 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부분개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sup>28)</sup> 특히 운송·통신과 금융·보험은 대부분의 OECD국가들도 (부분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부문으로서 우리로서도 개방시에 上限線을 설정

25) 사회문화적 파급영향은 각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려움. 예를 들어 도박장 운영업의 경우 일반국민에 대한 사행심 조장이나 예술품 및 골동품소매업의 경우 문화재반출 등의 문제를 들 수 있음.

26) 서비스업 부문의 대체성을 나타내는 통계자료는 현 상황에서 접할 수가 없고, 다만 제조업 생산에 대한 기여도는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로 알아 볼 수 있다.

27) 이들 업종을 선정한 근거로는 1990년 산업연관표상의 제조업에 대한 투입계수를 비교한 것을 들 수 있다. 참고로 1990년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서비스업의 각 부문의 제조업에 대한 평균(산술평균) 투입계수를 그 크기순서대로 정리하여 나열하면, 도소매(0.035), 금융 및 보험(0.02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0.021), 운수 및 보관(0.015), 전력·가스·수도(0.014), 통신(0.003), 교육 및 보건(0.002), 건설(0.001), 사회 및 개인서비스(0.001) 등과 같다.

28) 개방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부분개방의 방식으로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의 수나 규모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거나 相互主義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단, 금융업중에서도 투자자문회사와 같이 대부분의 거래가 緣故者거래<sup>29)</sup>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완전개방하여도 별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분개방의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이와같이 각 업종의 영업행태를 비롯한 특수성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sup>30)</sup>

한편 별다른 국민소득 증대효과가 기대되지 않거나 또는 국민소득 증대효과보다는 사회문화적인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으로서 농축산업, 예술품 및 골동품소매업, 탐정업, 경마 및 유사경기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일단 계속 유보하고 中長期的인 事案으로서 개방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sup>31)</sup> 단, 이중에서 도박장운영업의 경우는 외국인을 주요 대상으로하는 관광호텔내에서 내국민의 출입을 제한하는 한에는 일반국민에 대한 사행심조장이라는 폐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으므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당해 호텔내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부분개방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공공성이 강한 신문·방송업 및 자원보존이라는 특수성이 내재하는 어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계속적으로 규제되

29) 연고자거래의 예를 들면 일정 그룹에 속한 투자자문회사가 그 그룹내의 회사들에 대한 투자자문을 하는 경우들을 들 수 있다.

30) 운송업의 경우 기타해상운송업에 있어서 예선업은 영세기업 수준인 국내업체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여 부분개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타항공운수유지서비스업의 경우는 레이다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국가안보, 항공보안 등의 이유로 계속 유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신업의 경우는 WTO 기본통신서비스 후속협상에 따라 조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은 근로자 인권침해 및 중간착취의 우려로 인해 ILO에서 제한을 인정하는 부문으로서 정부가 허가하는 노동조합에 의해서만 허용하는 부분개방을 고려할 수 있다.

31) 이외에 국민소득 증대효과도 그리 크지 않고 사회문화적 파급영향이나 개방시 입을 피해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완전개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로는 주점업, 점술업 등을 들 수 있다.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sup>32)</sup>

그밖에 1997년 이후 외국인투자가 부분적으로 개방될 예정인 49개업종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제제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 곡물소도매업, 운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을 완전개방하도록 하고 이들 일부 예외업종에 대해서도 부분개방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1997년 이후 외국인투자가 유보될 105개 업종에 대한 추가개방방안을 정리·제시하면 다음의 <表 V-14>와 같다. 이를 보면 1997년 이후 60개업종을 완전개방하고,<sup>33)</sup> 운송·통신업부문의 8개업종과 금융·보험업부문의 9개업종을 포함하여 총 33개업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개방 또는 그 개방폭을 확대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보통작물생산업 등 총 6개업종에 대한 개방여부는 중장기적 사안으로서 검토하도록 하고, 어업과 방송업의 6개업종은 향후에도 계속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 분류함으로써, 1997년 이후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유보될 업종수는 모두 45개로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sup>34)</sup>

32) 신문·방송업의 경우에도 외국어로 발행되는 신문이나 뉴스제공업에 한하여 부분 개방의 형태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33) 국내법상 그 제한사항이 내국민과 외국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 유보대상업종으로 분류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추가개방방안중에서 「'97 완전개방」으로 분류하였음. 이러한 경우의 예로는 담배제품제조업 및 수도사업이 해당됨.

34) 이상의 네가지 분류는 어디까지나 개방의 우선순위에 따른 분류이고, 그 구체적인 개방시기나 부분개방의 방식과 개방폭은 본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함.

〈表 V-14〉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추가개방방안 (1997년기준)

구 분	'97 완전개방	'97 부분개방	향후 개방고려	향후 제한지속
농수산업 10 (6)	해면양식업, 내수면양식업 수생동식물 중요생산업 어업관련서비스업	-	보통작물생산업 육우사육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일반해면어업 일반내수면어업
제조업 20 (4)	담배제품제조업 <sup>A</sup> 원유정제처리업 윤향유·그리스제조업 기타 석유정제분획물 재처리업 수생동물냉동품제조업 기타 수생동물가공· 저장처리업 동물성유지제조업 해조류가공·저장처리업 주정제조업, 소주제조업 곡물도정업 전분 및 유사제품제조업 두부 및 유사제품제조업 서적출판업 음식인쇄업, 경인쇄업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신문발행업 정기간행물발행업	-	-
전기·가스· 수도업 2 (0)	발전업, 수도사업 <sup>A</sup>	-	-	-
도·소매업 5 (4)	주유소운영업	곡물 및 종자도매업 곡물소매업, 고기도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6 (0)	일반유흥점업, 무도유흥점업 한국식유흥점업 극장식주점 외국인전용유흥점업 기타주점업	-	-	-

〈表 V-14〉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추가개방방안 (1997년기준)〈계속〉

구분	'97 완전개방	'97 부분개방	향후 개방고려	향후 제한지속
운송·통신업 15 (9)	외항화물운송업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항공기지상관리서비스업 무선전신·전화업 <sup>B</sup> 일반전국화물자동차운송업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업	시내버스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 내항화물운송업 기타해상운송업 정기항공운송업 부정기항공운송업 유선전신·전화업 <sup>B</sup> 기타전기통신업 <sup>B</sup>	기타항공운수 유지서비스업	-
금융·보험업 22 (9)	투자회사, 신탁회사 생명보험업 <sup>A</sup> 증권거래업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보험감정업 상해보험업 <sup>A</sup> 손해보험업 <sup>A</sup> 생명보험 재보험업 <sup>A</sup> 비생명보험 재보험업 <sup>A</sup> 상품교환업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	국내은행 기타일반금융업 상호금융업, 기타금융업 기타여신금융업 안정기금관리회사 보증보험업, 의료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4 (6)	비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토지개발공급업 경호 및 경비업 신용조사업 변호사업, 법무사업 기타 법무관련서비스업	주거용건물임대업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기타 부동산임대업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탐정업	-

〈表 V-14〉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추가개방방안 (1997년기준)〈계속〉

구 분	'97 완전개방	'97 부분개방	향후 개방고려	향후 제한지속
공공·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1 (7)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기타 오락관련사업 점술업	골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유선방송업 뉴스제공업	경마 및 유사경기장 운영업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합 105 (45)	60	33	6	6

註 : 괄호안의 숫자는 1997년이후에 외국인투자가 유보(부분개방포함)되는 업종수를 가리킴.

<sup>A</sup> : ENT(Economic Need Test)에 의해 신규설립이 제한되거나 또는 기타 국내법상 제한사항이 내국민과 외국인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직접투자 유보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

<sup>B</sup> : WTO 후속협상의 결과에 따라 개방여부를 조정할 업종.

## VI. 要約 및 結論

本 報告書는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외국인직접투자의 追加開放方案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의 본격적인 자유화정책이후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대부분 자유화되었으나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아직 그 개방정도가 미진하여 1994년 7월에 마련된 개방계획에 의하면 1997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총 105개 업종중 서비스업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가개방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개방의 효과면에서 보면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대체로 독점적경쟁에 의한 제품차별화가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서비스의 種類(數)를 증가시킴으로써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外部效果 작용을 일으켜서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때 제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의 비중이 크고 서비스업 부문의 代替性이 작을수록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正의 효과가 커져서 후생증대효과가 커지게 된다.

멕시코를 비롯한 주요 OECD 국가들에 있어서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유보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및 금융서비스, 신문·방송 등의 대중매체, 항공운송, 어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대다수의 국가가 相互主義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自國經濟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특정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유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例로는 아일랜드의 소맥정제업, 일본의 피혁 및 피혁제품제조업, 스페인의 도박·복권 및 카지노, 스위스의 영화배급 및 상영 등에 대한 유보를 들 수 있다.

OECD 회원국이외의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대체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종이

나 방송 등 공공사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은행 등 금융부문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투자를 유보하고 있다. 그밖에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으로 대만의 경우는 공공안전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기술수준이 낮고 투자기간이 짧은 반면 이익율이 높은 부문과 선진기술도입 효과가 극히 미미한 부문이라고 표시하여 자국 산업 보호 측면이나 경제개발 정책과 연계하여 외국인투자를 선별적으로 도입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148개의 외국인투자 대상업종중 현재 150개 업종에 대하여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가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중 108개 업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가 전면 허용되지 않고 있고 나머지 42개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 허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외국인투자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들 150개 제한업종중에서 1997년이후에도 그 제한이 지속될 105개 업종에 대하여 그 추가개방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첫째,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이나 소득증대 효과, 둘째, 국내 경쟁력 상황 및 예상피해, 세째, 사회문화적 파급 영향, 네째, 기타 공공성 및 특수상황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가 갖는 국민소득증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입비율이나 공헌정도가 크고 또한 대체성이 작은 부문부터 개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1997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가 전면 불허되는 56개업종중에서 우선적으로 개방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유소운영업, 운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비주거용건물임대 및 분양공급업, 토지개발공급업, 변호사 및 법무관련업, 인력공급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국내업계의 경쟁력이 미약하여 외국인투자가 개방될 경우 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점차 개방폭을 확대하여 나가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특히 운송·통신과 금융·보험은 대부분의 OECD국가들도 (부분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부문으로서 우리로서도 개방시에 上限線을 설정하거나 相互主義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별다른 국민소득 증대효과가 기대되지 않거나 또는 국민소득 증대효과보다는 사회문화적인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으로서 농축산업, 예술품 및 골동품소매업, 탐정업, 경마 및 유사경기장운영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일단 계속 유보하고 中長期的인 事案으로서 개방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성이 강한 신문·방송업 및 특수성이 내재하는 어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계속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1997년이후 외국인투자가 부분적으로 허용될 예정인 49개업종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제제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 곡물소도매업, 운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을 완전개방하도록 하고 이들 일부 예외업종에 대해서도 부분개방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추가개방방안에 의하면 1997년이후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유보될 업종수는 현재 계획상의 105개에서 그 절반 수준인 45개로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Brecher, Richard A. and Bhagwati, Jagdish N., "Foreign Ownership and the Theory of Trade and Welfa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81.
- Brecher, Richard A. and Diaz Alejandro, Carlos F., "Tariffs, Foreign Capital and Immiserizing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77.
- Edwards, Sebastian, "The Order of Liberalization of the Current and Capital Accounts of the Balance of Payments", NBER Working Paper No. 1507, 1984.
- Kapur, Basant K., "Optimal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Liberalization of Less Developed Econom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 1983.
- Martinez, Gabriel, "Inversion En El Tratado De Libre Comercio", in 「Lo Negociado De TLC」
- Rivera-Batiz, Francisco L. and Rivera-Batiz, Luis A., "Europe 1992 and the Liberalization of Direct Investment Flows: Services versus Manufacturing",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ume 6, Number 1, pp. 45-57, 1992.
- Wang, Yunjong, "Service Multinationals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7, No. 1, 1994.
- Wint, Alvin G., "Liberaliz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s: The Vertical Screen", *World Development* 20-10. pp. 1515-1529, 1992.

## KIEP 發刊資料 案內

### ■ 政策研究

90-01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90.03)	金學洙
90-02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90.03)	閔充基
90-03	換率制度와 外換危險管理 ('90.05)	金宗萬
90-04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90.05)	孫讚鉉
90-05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 ('90.06)	金泰俊
90-06	ASEAN 主要國의 貿易·產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90.09)	柳在元
90-07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90.10)	金學洙
90-08	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方向 ('90.10)	金南斗
90-09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產業의 國際化 ('90.10)	張義泰
90-10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12)	徐相祿
91-01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91.01)	姜興求
91-02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 ('91.03)	金宗萬
91-03	EC 貿易構造의 變化 ('91.04)	金廷洙
91-04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91.03)	李長榮
91-05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91.04)	吳勇錫
91-06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91.04)	朴濟勳
91-07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91.04)	金時中
91-08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91.04)	李相學
91-09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91.05)	曹琮和
91-10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와 對應方案 ('91.05)	閔充基
91-11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 ('91.07)	金學洙
91-12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의 改善과 活用方案 ('91.08)	蔡 旭
91-13	우리나라 서비스產業의 生産性變化和 生産性的 國際比較('91.08)	俞鎮守
91-14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91.08)	裴眞永
91-15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產業의 競爭力 제고방안 ('91.08)	金泰俊
91-16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 ('91.09)	洪裕洙
91-17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 ('91.09)	金南斗
91-18	한국·臺灣·日本의 產業政策과 產業構造調整 ('91.09)	柳在元
91-19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 ('91.10)	金宗萬

91-20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91.12)	共 同
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 ('92.01)	鄭永祿
92-02	貿易關係 政策 및 制度의 現況과 改善方向 ('92.02)	共 同
92-03	統獨 1年の 경제적 評價와 展望 ('92.03)	裴眞永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日本의 貿易障壁 ('92.03)	俞鎮守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 ('92.03)	蔡 旭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原產地規程 ('92.03)	韓弘烈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日本의 輸入品流通过 流通障壁 ('92.03)	趙炳澤 李永俊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會計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92.04)	金宗萬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92.06)	張義泰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92.06)	朴濟勳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92.06)	鄭永祿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92.06)	金益洙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標準 및 檢査制度 ('92.07)	成克濟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EC의 貿易障壁 ('92.07)	閔充基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92.07)	金博洙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92.07)	金泰俊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92.07)	李長榮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92.07)	李在雄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92.07)	洪裕洙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92.07)	申世敦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92.07)	李相學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政府調達 關聯 障壁 ('92.08)	崔仁範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美國의 貿易障壁 ('92.08)	金南斗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92.09)	共 同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92.09)	孫炳海
92-26	UR 총점검 : 分野別 評價와 우리의 對應 ('92.10)	共 同
92-27	換率, 金利 및 貨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92.10)	金宗萬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92.10)	共 同
92-29	日本의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92.10)	金昌男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92.12)	김진천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和 우리나라 制度의 改善方案 ('93.01)	蔡 旭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93.01)	韓弘烈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93.02)	金時中
93-04	日本의 技術貿易 ('93.02)	俞鎮守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金學洙
93-06	블럭화時代의 亞·太 經濟協力	共 同
93-07	中國의 技術導入 政策과 中日技術協力	吳勇錫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93.03)	朴濟勳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3)	康仁洙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3)	金宗萬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分業生産의 役割('93.04)	任千錫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93.04)	曹正鉉
93-13	우리들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93.04)	李昌在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과 換率政策에 대한 政策示唆點 ('93.05)	金泰俊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 ('93.05)	金益洙
93-16	中國 輸入構造變化와 우리들의 對應方向 ('93.05)	鄭永祿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化 ('93.05)	閔充基
93-18	韓美間 産業構造의 特性이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8)	成克濟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와 韓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 ('93.08)	金尙謙
93-20	EC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8)	金博洙

93-21	韓·中 環境協力에 관한 研究('93.09)	共 同
93-22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方向과 課題('93.11)	王允鍾
93-23	日本の 對아시아 技術移轉 戰略과 韓國의 對應 ('93.11)	洪裕洙
93-24	러시아 極東地域의 經濟와 우리의 經濟協力方案('93.11)	李昌在
93-25	UR 총점검 : 最終協定의 분야별 評價 ('93.12)	共 同
93-26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現況과 國際化 方向 ('93.12)	孫讚鉉
93-27	南·北韓의 統一에 비추어 본 獨逸 信託管理公社의 役割과 意義 ('93.12)	朴成勳
93-28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93.12)	金時中
93-29	CIS 域內 交易 및 金融關係 分析 ('93.12)	朴濟勳
93-30	日本企業의 對中直接投資의 動向과 戰略 ('93.12)	金益洙
93-31	最近 우리나라의 日本技術 導入現況과 政策方向 ('93.12)	任千錫
93-32	環境關聯 經濟의 手段의 運用 現況 및 展望 ('93.12)	李鎬生
93-33	亞·太經濟協力の 새 方向 ('93.12)	共 同
93-34	交易條件變化와 資本自由化의 效果分析 ('93.12)	表鶴吉, 權皓寧
93-35	21世紀를 향한 韓·日間 技術分業과 技術協力の 基本方向 ('93.12)	朴宇熙 森谷正規
93-36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 ('93.12)	吳勇錫
93-37	資本自由化와 換率政策方向 ('93.12)	孫正植, 朴大槿
93-38	東歐改革의 進展과 經濟協力 擴大戰略 ('93.12)	鄭甲泳
93-39	資本自由化에 관한 事例分析 ('93.12)	金仁竣
93-40	亞·太經濟協力の 深化方案 ('93.12)	共 同
93-41	東歐 主要國의 民營化 研究 ('93.12)	尹健秀
93-42	우리나라의 對東歐 交易現況과 展望 ('93.12)	權寧堧
93-43	美國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12)	崔仁範
94-01	戰略的 提携와 技術革新의 國際化 ('94.01)	洪裕洙
94-02	NAFTA 原產地規程의 意義와 政策示唆點 ('94.01)	韓弘烈
94-03	統一이 東西獨의 産業立地와 産業構造에 미친 影響 ('94.02)	裴眞永
94-04	議題 21과 우리나라의 持續可能開發 戰略 ('94.02)	韓宅煥
94-05	WTO出帆과 新交易秩序-분야별 內容과 示唆點 ('94.07)	共 同
94-06	韓美間 科學技術協力 強化方案 研究 ('94.11)	洪裕洙
94-07	外國人 直接投資의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研究 ('94.11)	王允鍾
94-08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94.12)	共 同
94-09	21世紀 東北亞經濟協力を 위한 推進戰略 ('94.12)	李昌在
94-10	韓中經濟協력과 在中國同胞의 役割 ('94.12)	金時中

94-11	ASEAN 主要國의 外國人直接投資誘致와 그 示唆點 ('94.12)	魯在峯
94-12	韓美間 中長期 産業技術協力方案 ('94.12)	洪裕洙
94-13	知的財産權과 競爭政策의 國際的 調和 ('94.12)	丁相朝
94-14	外換 自由화와 換危險管理 ('94.12)	朱尙榮
94-15	統一以後 東獨經濟의 産業構造變化 研究 ('94.12)	金龍龜·朴成勳
94-16	戰略的 貿易政策으로서의 R&D 補助金 政策의 方向 ('94.12)	李正淵
95-01	日本企業의 對中進出：主要業種의 成果分析和 向後展望('95.05)	申晚秀 李掌魯
95-02	國際金融市場의 統合과 資本費用('95.05)	權才重
95-03	중국 內需市場의 構造的 特性和 進入 流通障壁： 消費財 工山品 市場을 中心으로'95.05)	金益洙

### ■ 政策資料

90-01	蘇聯·中國 및 東歐의 變化和 對應 ('90.01)	共 同
90-02	1990年代 國際經濟 環境 變化和 對應戰略 ('90.06)	共 同
90-03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의 進展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90.08)	朴泰鎬
90-04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의 展開 ('90.10)	蘇侖燮
90-05	美國·日本의 金融自由화와 政策示唆點 ('90.11)	李長榮
91-01	北韓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 ('91.03)	張榮植
91-02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91.03)	姜正模
91-03	蘇聯 經濟改革政策과 우리의 對應 ('91.05)	李善煥, 方燦榮
91-04	臺灣·日本의 金融自由화와 政策示唆點 ('91.09)	李長榮
91-05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 效果分析 ('91.10)	崔仁範, 玄定澤
91-06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基本戰略 ('91.11)	金學洙
91-07	蘇聯建設市場과 韓國建設業體의 進出 可能性 分析 ('91.12)	朴康植
91-08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論議와 對應方案 ('92.12)	孫讚鉉
92-01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92.01)	共 同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92.01)	朴濟勳
92-03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92.03)	金南斗, 柳在元
92-04	EEA 創設의 問題點과 域外國들에 대한 影響 ('92.04)	閔充基
92-05	아시아 主要 開發途上國의 非關稅障壁 ('92.07)	魯在峯
92-06	EC 海運産業의 變化和 示唆點 ('92.08)	閔充基
92-07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92.09)	共 同
92-08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92.11)	共 同

92-09	對內外與件 變化와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2.12)	金益洙
92-10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變化展望과 對應戰略 ('92.12)	共同
93-01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產地規程 ('93.05)	韓弘烈
93-02	GATT 最惠國待遇 原則과 南北韓 物資交流 ('93.07)	韓弘烈
93-03	韓國의 無償援助와 有償援助의 連繫方案 ('93.07)	金學洙
93-04	EC 競爭政策 變化와  우리의 對應方案 ('93.08)	閔充基
93-05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93.09)	共同
93-06	西方의 對러시아 經濟協力 戰略과 示唆點 ('93.10)	朴濟勳
93-07	主要國의 先物市場 規制定策 ('93.10)	曹正錄
93-08	國際貿易紛爭의 現況과 GATT의 役割 ('93. 11)	蔡 旭
93-09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3.12)	金準東
93-10	貿易과 競爭政策: OECD의 論議 ('93.12)	金廷洙
93-11	러시아 經濟改革의 進行 狀況과 評價 ('93.12)	李昌在
93-12	地域主義 深化와 韓國의 選擇 ('93.12)	魯在峯
93-13	國內 製造業分野 外國人投資企業의 現況 및 特性 ('93.12)	金寬濤
93-14	日本의 金融自由化와  貨의 國際化 ('93.12)	權才重
93-15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論議와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93.12)	俞鎮守
93-16	通貨先物市場 導入에 관한 研究 ('93.12)	金哲三
93-17	OECD 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93.12)	洪裕洙
94-01	1994年度 世界經濟 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01)	
94-02	EC通貨統合의 進展과 波及影響 ('94.01)	曹琮和
94-03	國際金融 環境變化와 企業의 國際金融市場 活用戰略 ('94.01)	曹正錄
94-04	技術導入과 테크노마트의 活用 ('94.03)	王允鍾
94-05	戰換期의 臺灣經濟 ('94.02)	柳在元
94-06	우리經濟의 國際化 ('94.04)	金博洙, 金廷洙
94-07	新三低-舊三低의 比較分析과 政策對應('94.5)	共同
94-08	主要國의 投資自由地域 運營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4.05)	金準東
94-09	北韓의 交易現況과 對外經濟政策 ('94.10)	金尙謙
94-10	對日貿易 赤字國의 對應 실태와 示唆點 ('94.10)	任千錫
94-11	環境產業의 國際動向 및 政策示唆點 ('94.10)	張台求
94-12	UN 持續開發委員會의 論議現況 및 政策課題 ('94.11)	李鎬生
94-13	1995年度 世界經濟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12)	共同
94-14	서비스產業의 國際化 ('94.12)	王允鍾

- 94-15 서비스交易과 세이프가드 ('94.12) 蔡 旭
- 94-16 글로벌化 時代에서의 輸出과 海外直接投資 ('94.12) 金準東
- 94-17 豆滿江地域開發事業과 韓半島 ('94.12) 金益洙
- 94-18 러시아 經濟改革의 地方別 波級影響 ('94.12) 李昌在
- 94-19 金融監督規制의 現況과 對應方案 ('94.12) 曹琮和
- 94-20 ASEAN 自由貿易地帶의 設立과 韓國의 對外貿易政策 ('94.12) 吳尙勉
- 94-21 OECD 主要國의 ODA 支援現況과 韓國의 對應戰略 ('94.12) 金學洙
- 94-22 東北亞 環境協力の 推移와 課題 ('94.12) 韓宅煥
- 94-23 서비스 交易에 있어서의 交易障壁 ('94.12) 禹榮洙
- 94-24 美國 通商政策의 基調와 對東아시아 貿易自由化 方案 ('94.12) 金尙謙
- 94-25 엔高下에서의 日本企業의 對應實態와 示唆點 ('94.12) 任千錫
- 94-26 專門職 서비스 資格認定에 관한 研究 ('94.12) 金址鴻
- 94-27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Eugene John Park  
A Review of the Curren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94.12)
- 94-28 海外資金調達의 國內巨視經濟에 미치는 影響과 示唆點 ('94.12) 張義泰
- 94-29 技術標準의 國際的 現況과 政策示唆點('94.12) 孫讚鉉
- 95-01 UR 이후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懸案('95.04) 俞鎮守
- 95-02 貿易과 環境 : GATT/WTO의 논의('95.04) 李鎬生
- 95-03 主要 先進國의 對韓 輸入規制 形態 比率分析('99.05) 康仁洙
- 95-04 農畜產物 市場開放에 따른 輸入管理方案('95.06) 姜奉淳
- 95-05 日本기업의 對 아시아 직접투자('95.06) 李東琪, 李允哲

#### ■ 세미나資料

- 90-01 EC 統合과 政策對應 ('90.01) 共 同
- 90-02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90.04) 朴泰鎬 編
- 90-03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의 展望 ('90.06) 吳勇錫 編
- 90-04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90.10) Jang-Won Suh and Jae-Bong Ro (eds.)
- 91-01 EC 統合과 우리의 對應方案 ('91.02) 閔充基 編
- 91-02 Uruguay Round : Taeho Bark and Wook Chae (eds.)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91.09)
- 91-03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91.12) Jang-Won Suh (ed.)
- 92-01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 Chung Ki Min (ed.)  
Problems and Prospects ('92.06)
- 92-02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Jehoon Park

- Between Korea and Russia ('92.09)
- 93-01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93.02) Jin Young Bae (ed.)
- 93-02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  
Certainties vs. Uncertainties ('93.12) Chang-Jae Lee
- 93-03 The Asian Dimension of EC Integration ('93.12) Bak-Soo Kim
- 93-04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93.12) Chang-Jae Lee
- 94-01 韓日經濟協力的 新構想 ('94.06) 任千錫 編
- 94-02 韓中經濟協力的 新構圖想 ('94.06) 金時中 編
- 94-03 新세계무역체제와 한국 :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  
초청강연 ('94.09) 孫讚鉉 編
- 94-04 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um 2 ('94.11) 洪裕洙 編
- 94-05 Trade-Environment Issues and Korea's Alternatives  
( '94.12) 韓宅煥 編
- 95-01 中國의 改革 開放과 韓中經濟協力的 未來('95.04) 金時中

#### ■ Working Paper

- 90-01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08) 金廷洙
- 90-02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 ('90.08) L.Y.Mytelka
- 91-01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91.01) 郭承濬
- 91-02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05) 朴泰鎬
- 91-03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07) 洪裕洙
- 91-04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91.07) 柳莊熙
- 91-05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91.10) Taeho Bark
- 92-01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92.09) Jang-Hee Yoo
- 93-01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ISDP) ('93.01) In-Soo Kang
- 93-02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93.03)

	Jai-Won Ryou and Byung-Nak Sona	
93-03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3.06)	Sung-Hoon Park
93-04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93.06)	Wook Chae
93-05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93.10)	Chung Ki Min
93-06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 '93.12)	Joo-Sung Jun
93-07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93.12)	Yoo Soo Hong
93-08	Changing Patterns of Korea'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93.12)	Jin-Soo Yoo
94-01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94.01)	Chang-Jae Lee
94-02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n and Russia ('94.08)	JeHoon Park
94-03	Technology Transfer : the Korean Experience ( '94.11)	Yoo Soo Hong

---

著者略歴

---

金 準 東

1984. 2.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卒業  
1987. 12. 美國 University of Chicago 經濟學 碩士  
1991. 6. 美國 University of Chicago 經濟學 博士  
1991. 7. ~ 현재.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研究委員

政策資料 95-06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追加開放方案

---

1995年 8月 21日 印刷

1995年 8月 23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發行處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서울市江南區大峙洞942-1番地君子빌딩14層-18層  
電話：528-5555 FAX：528-5511, 5522  
登錄：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 刷 오름시스템(주) 전화：273-7011

---

\* 本 報 告 書 內 容 的 無 斷 轉 載 · 譯 載 · 複 寫 等 禁 止

ISBN 89-322-2038-7